

정책연구

2022-12

전라북도 필수노동자 현황과 지원방안

김수은 전희진 박세현



Jeonbuk Institute

정책연구

2022-12

전라북도 필수노동자 현황과 지원방안

김수은 전희진 박세현

연구진 및 연구 세부 분담

연구책임 김수은 | 연구위원 | 연구총괄, 1장, 3장, 4장(1절, 2절), 5장
공동연구 전희진 | 연구위원 | 제2장, 4장(2절, 3절 일부)
박세현 | 전문연구원 | 제2장(2절, 3절 일부)

자문위원 김종진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박명준 |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안수영 | 충남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지연 | 전북대학교 지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원
강문식 | 전북 노동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노현정 | 전라북도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정책국장

연구관리 코드 : 21JU33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으로서
전북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요약

SUMM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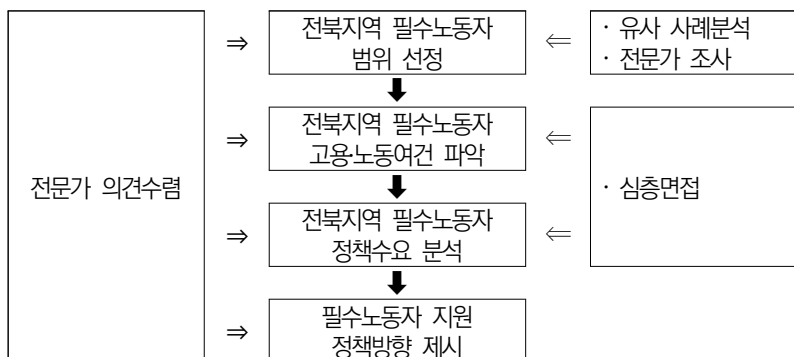
1. 연구 개요

■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Covid-19의 확산에 따라 국내외에서 필수노동에 대한 논의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노동자 외에도 사회 전체와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 필수노동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지역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할 필수업무와 필수노동자에 대한 정의와 범위를 논의하고자 함
- 이를 통해 전라북도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필수노동자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방향 및 지원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 연구 체계

-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필수업무와 필수노동자에 대한 논의동향 및 정책현황을 검토하고, 전라북도 지역차원에서의 필수업무와 필수노동자 지원 범위를 선정하고 우선 지원이 필요한 필수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근로 여건 및 정책수요를 분석하기 위해 전문가 조사를 통해 AHP 분석 및 필수노동자 면접조사를 진행하였음. 또한 정책방향 및 지원과제 제안을 위해 전문가 의견수렴 및 자문회의를 실시하였음



2. 전라북도 필수업무 및 필수노동자 우선 지원 순위 설정

- 전라북도 필수업무 범위 설정을 위해 법률상 정의, 업무의 대면불가피성, 국제적 논의(OECD), 국내 논의(정부차원), 노동현장의 요구, 전라북도 지역산업과의 연관성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본 연구에서 필수업무로 논의될 수 있는 분야는 교육, 보건의료, 복지·돌봄, 운수·물류, 환경미화, 콜센터, 식품 생산·가공, 에너지(재생) 8개 영역임
- 이중 현재의 감염병 확산의 위기에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사회기능 유지, 대면성의 불가피성을 모두 충족하는 분야는 교육, 보건·의료, 돌봄, 운수·물류, 교육, 환경미화, 식품·가공·생산 등 6개 분야로 설정하였으며, 필수업무로 설정된 6개 분야 중 대면성이 불가피한 업무를 중심으로 표준직업분류 중분류 기준에 따라 22개 분야의 노동자를 전라북도의 필수노동자 정의의 대상 범위로 설정함
- 22개 분야의 필수노동자 중 정책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기 위해 도내 전문가를 대상으로 AHP 분석법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우선지원 업무는 돌봄서비스, 청소방역가사서비스, 보건의료종사자, 택배 및 기타운송, 간호사, 항공철도선박조종사 및 관제사, 자동차운전원, 의료기사치료사재활사, 물품이동장비조작원, 유치원교사, 의사한의사치과 의사 등 11개 분야로 나타남

3. 전라북도 필수노동자 실태 및 정책 수요

- 앞 장에서 도출된 우선 지원이 필요한 주요 필수업무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근로여건과 고충 사항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노동 제공 과정에서 건강, 안전 보장 및 처우 개선 등 필수노동에 종사하는 당사자들의 정책수요를 도출하기 위해 개별 또는 집단 면접조사를 실시함
- 조사는 2022년 02월 10일부터 2022년 02월 24일(총 15일간) 11명을 대상으로 개별 또는 집단면접을 진행하였음

- 조사결과 필수노동자들의 근로여건은 ① 비합리적 고용관계로 인한 고용 불안정 ②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적 대우 ③ 열악한 업무환경 및 시설 ④ 건강과 안전에 대한 지원 부족 ⑤ 노동자에 대한 존중과 배려 부족 등으로 나타남
- 코로나19 이후 업무량 증가, 이용자 감소로 인한 소득액 변화, 방역준수에 따른 비용 부담 증가, 감염에 대한 스트레스, 백신휴가 제공의 대상에서 소외된 부분으로 실제 물리적 업무환경의 변화 및 정서적 환경변화에 따른 고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필수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부불 수당 지급, 안전과 건강권 보호, 방역강화 및 지원사업 개선의 정책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4. 전라북도 필수노동자 지원방안

- 국내외 필수노동의 범위에 대한 검토, 전라북도 필수업무 및 필수노동자 실태와 정책 수요 조사를 통해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필수노동자 지원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음
- 첫째, 필수노동자의 노동 가치에 대한 상시적 인정임. 필수노동자는 재난상황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동일하게 국가와 사회의 유지 및 국민의 생활 지원을 위해 노동을 제공해왔으며, 그 과정에서 부불위험수당을 감내해왔으나 이에 비해 이들의 노동가치는 상대적으로 저평가 되어 왔음
- 그런 의미에서 필수업무 및 필수노동자들이 실제로는 사회적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노동을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는 인식이 사회전반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음
- 둘째, 필수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호 및 지원확대가 필요함. 필수노동을 제공하는 공간의 작업시설 노후화로 안전과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으며, 대면접촉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감염병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경우도 허다함
- 필수노동자들의 권리와 이익, 건강과 안전이 보호됨으로써 필수노동의 질이 향상된다면 이는 국가와 사회, 국민들에게 이익이기 때문에 필수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

- 셋째 필수노동자에 대한 정책 기반을 마련해야 함. 재난상황은 감염병 뿐만 아니라 자연재해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감염병의 유행은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후 또 다른 형태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가와 지자체에서 필수노동자에 대한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필수노동자들이 사회에 필요한 서비스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정교하고 세심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이러한 필수노동자 지원정책의 기본방향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필수노동자 지원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함

기본방향	지원과제	주요 내용
필수노동자의 노동 가치에 대한 상시적 인정	필수노동자 중요성 공감대 형성	필수노동자 캠페인 확대
	추가 방역업무에 대한 보상	인력확충, 방역물품 지원, 방역수당 지급 등
필수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호 및 지원확대	필수노동자 작업환경 개선	작업시설 및 휴게공간 리모델링
	필수노동자 상병수당 및 유급휴가 지원	유급 백신휴가 정착
필수노동자에 대한 정책 기반 마련	직종별 필수노동실태조사 및 보호·지원계획 수립	직종별로 순차적 조사 및 계획 수립
	필수노동자 권익보호 지원센터 설치운영	전라북도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기능 확대

차 례

CONTENTS

요 약 i

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가. 연구의 배경 3
나. 연구의 목적 4
2. 주요 연구내용 및 체계 5
가. 세부 연구내용 5
나. 연구 체계 6

제2장 필수노동자 개념 및 정책 현황

1. 국제사회에서의 필수노동자 개념 및 정책 현황 9
가. 필수노동자 정의 9
나. 필수노동자 관련 선행연구 11
다. 필수노동자 관련 국외 정책 사례 13
2. 국내 필수노동 관련 법령 18
가. 법률 및 자치법규 현황 18
나. 전라북도 필수노동자 조례 제정 현황 28
3. 국내 필수노동자 지원정책 현황 29
가. 중앙정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정책 29
나. 지방정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정책 31

제3장 전라북도 필수업무 및 필수노동자 범위 설정

1. 필수업무 범위 기준 설정 43

 가. 필수업무의 속성 43

 나. 필수업무 범위 설정 기준 43

 다. 본 연구에서의 필수업무 범위 및 필수노동자 현황 48

2. 우선지원 필수노동자 도출 51

 가. 우선지원 분야 도출을 위한 AHP 분석 절차 51

 나. AHP 적용 중요도 산출 53

 다. AHP 분석 종합결과 56

제4장 전라북도 필수노동자 근로여건 및 정책수요 조사

1. 조사개요 63

 가. 조사 목적 및 내용 63

 나. 조사대상 64

2. 조사결과 65

 가. 필수노동자 노동환경 65

 나. 코로나19 이후 업무환경 변화 및 고충사항 70

 다. 정책수요 75

3. 시사점 80

차 례

CONTENTS

제5장 전라북도 필수노동자 지원방안

- 1. 필수노동자 지원 정책 기본방향 87
- 2. 필수노동자 지원 과제 89
 - 가. 필수노동 가치 인정 및 인식 제고 89
 - 나. 필수노동자 건강, 안전 보호 및 지원 확대 92
 - 다. 필수노동자에 대한 중장기 정책지원 토대 마련 94

참고문헌 99

부록 103

표 차례

LIST OF TABLES

[표 1-1] 연구 수행체계	6
[표 2-1] 국제기구별 필수노동자 정의	10
[표 2-2] 성동구 필수노동자 지원정책 제언 요약내용	12
[표 2-3] 논산시 필수노동자 실태조사 연구 요약내용	12
[표 2-4] 연방정부 필수노동자 식별리스트	13
[표 2-5] CARE act, HEROES act 및 ARP act 주요 내용 비교	15
[표 2-6] 영국 필수노동자 직업군	16
[표 2-7]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18
[표 2-8] 지역별 필수노동자 조례 제정 현황 종합	19
[표 2-9] 지역별 필수노동자 조례 제정 현황	20
[표 2-10] 지역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조례 제정 현황	27
[표 2-11] 「전라북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 주요내용	28
[표 2-12] 정부합동 필수노동자 보호·지원대책	30
[표 2-13] 경기도 필수노동자 관련 주요 정책	38
[표 3-1] 필수업무에 해당하는 필수노동자 후보군	45
[표 3-2] 지역별 필수업종 및 직업	46
[표 3-3] 필수노동에 포함되어야 할 직종	47
[표 3-4] 필수업무 범주 논의 종합	48
[표 3-5] 본 연구에서의 필수업무 및 필수노동자	50
[표 3-6] 전라북도 필수노동자 현황(2021년 상반기 기준)	50
[표 3-7] AHP 분석 계층구조	52
[표 3-8] 제1계층 가중치 계산 결과	54
[표 3-9] 포용성 가중치 계산 결과	54
[표 3-10] 지역적합성 가중치 계산 결과	54
[표 3-11] 정책연계성 가중치 계산 결과	55
[표 3-12] 계층구조의 요인별 가중치 산출 종합	55
[표 3-13] 종합 분석 결과	60

표 차례

LIST OF TABLES

[표 4-1] 전라북도 필수노동자 근로여건 실태 및 정책수요 조사설계	63
[표 4-2] 인터뷰 참여자 구성 현황	64
[표 4-3] 필수노동자 면접조사 결과 요약	81
[표 5-1] 전라북도 필수노동자 지원과제 요약	89
[표 5-2] 서울의 필수노동자 정의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시민민심 유도 사례 ..	91
[표 5-3]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93
[표 5-4] 전라북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조례(2021. 8. 13. 제정) ...	94

그림 차례

LIST OF FIGURES

[그림 2-1] 광주광역시 이동노동자 쉼터	39
[그림 2-2] 제주 이동노동자 혼디쉼팡	40
[그림 3-1] 평가항목의 계층구조	52
[그림 3-2] 포용성기준 중요도	56
[그림 3-3] 지역적합성기준 중요도	57
[그림 3-4] 연계성기준 중요도	58
[그림 5-1]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릴레이 캠페인 사진	90
[그림 5-2] 한국형 청소차 사진	92
[그림 5-3] 000 휴게공간/샤워실 사진	92



제 1 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주요 연구내용 및 체계



제 1 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 연구의 배경

- Covid-19의 확산에 따라 국내외에서 필수노동에 대한 논의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 이는 해당 노동자 외에도 사회 전체와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 필수노동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며 정책적 관심이 급격히 확대되었음
 - 필수업무 : 재난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사회의 기능 유지에 필요한 업무
 - 필수노동자 :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보건·의료, 돌봄, 택배·배달, 환경미화, 콜센터, 대중교통 등 여객 운송업무 종사자 등)으로 정의(관계부처 합동, 2020)
- 필수노동자는 국가와 지역사회의 안녕과 지속을 위해 필수적인 서비스와 핵심 공공서비스 공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면접촉으로 인해 감염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였음
 - Covid-19에 따른 감염병 국면에서, 중앙정부 차원의 거리두기 조치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배송, 물류, 건설, 공공안전관리, 돌봄, 육아, 의료와 위생 등의 영역에서는 일상과 생존의 존속을 위해 대면노동이 지속되고 있음(이승윤 외, 2021)
 - 필수노동자들의 임금이 낮은 이유는 첫째, 노동시장 진입이 용이하여 노동력의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으며 둘째, 고임금 직종에 비해 사회적 파급효과가 높지 않으며, 셋째, 필수노동의 효용성과 무관하게 임금이 결정되며 넷째, 이들 필수노동자의 협상력이 매우 약하기 때문임(홍성훈, 2020)
-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일부 국가들의 경우 필수노동자를 정의하고 지원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음
 - 미국과 영국에서는 각각 ‘Essential Worker’, ‘Key Worker’로 표현하며, 필수서비스와 핵심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노동자로 정의함

- (미국) 필수노동자(essential employee) 위험수당 등 「HEROES Act」 제정 추진, (美. 플로리다주 등) 필수노동자 범위 등에 대한 지침 마련
- (캐나다) 필수노동자 지원프로그램(EWSP: Essential Worker Support Program) 운영 및 필수노동자 자격범위 설정(보건의료 및 사회서비스, 돌봄노동, 청소, 교통 및 물류, 환경미화 등)
- (영국) 필수노동자 대상 설정(보건복지, 교육·보육, 핵심공공서비스, 정부 행정 부문, 식료품과 필수 재화, 공공안전 및 국가 보안, 교통과 항공, 가스·전기·수도·통신 등 공공서비스 및 금융서비스 등)
- 우리 정부에서도 국가차원에서 감염 및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 과로 및 취약한 근무여건, 노동권 보호 및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필수노동자들을 위해 「필수노동자 보호·지원을 위한 대책」 및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약칭:필수업무종사자법)」을 제정하였음(2021. 5. 18. 제정, 2021. 11. 19. 시행)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연구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① 전라북도 필수업무 및 필수노동자의 정의와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 ② 전라북도 필수노동자 보호·지원을 위한 지역차원의 정책영역은 어떻게 볼 것인가?

나. 연구의 목적

- 필수노동자의 보호와 지원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수노동의 현황, 정책에 대한 수요뿐만 아니라 필수노동의 정의조차 명료하게 정립되지 않은 상황임
 - 국가단위에서조차 필수업무와 필수업무 종사자를 명확하게 정의 내리지 않은 상태임
 - 지자체별로도 필수노동자 범위와 정책대상, 지원범위 및 기준이 상이하고, 전라북도 조례에서도 필수업무 지정과 필수업무종사자를 단체장이 지정하고 지정결과를 공지하도록 되어 있음(「전라북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 제8조)
- 본 연구의 목적은 전라북도 차원의 필수노동의 정의와 필수노동자 연구를 체계화하고 이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음

- 구체적으로는 전북지역에서의 필수업무와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 선정, 필수노동자들의 근로여건 및 정책수요를 파악하고 정책의 추진방향과 중점과제를 마련하고자 함
 - 이를 위해 국내외 필수노동자 정의 및 지원정책을 검토하고 전라북도 필수노동자 선정을 위한 전문가 조사, 필수노동자 고용·노동 현황 및 정책수요 파악을 위한 심층면접 등을 바탕으로 필수노동자 지원체계 및 지원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2. 주요 연구내용 및 체계

가. 세부 연구내용

■ 전북지역 필수노동자 범위 설정

- ‘필수업무’를 규정하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정책 체계 및 지원 범위가 조정될 필요가 있으나 정부차원에서의 ‘필수업무’ 정의가 내려지지 않은 상황
- 전북지역에서의 필수업무와 필수노동자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필수노동자 후보군을 추출한 뒤 전문가 검토를 통해 분야를 선정하고자 함

■ 나. 전북지역 필수노동자 현황 및 정책수요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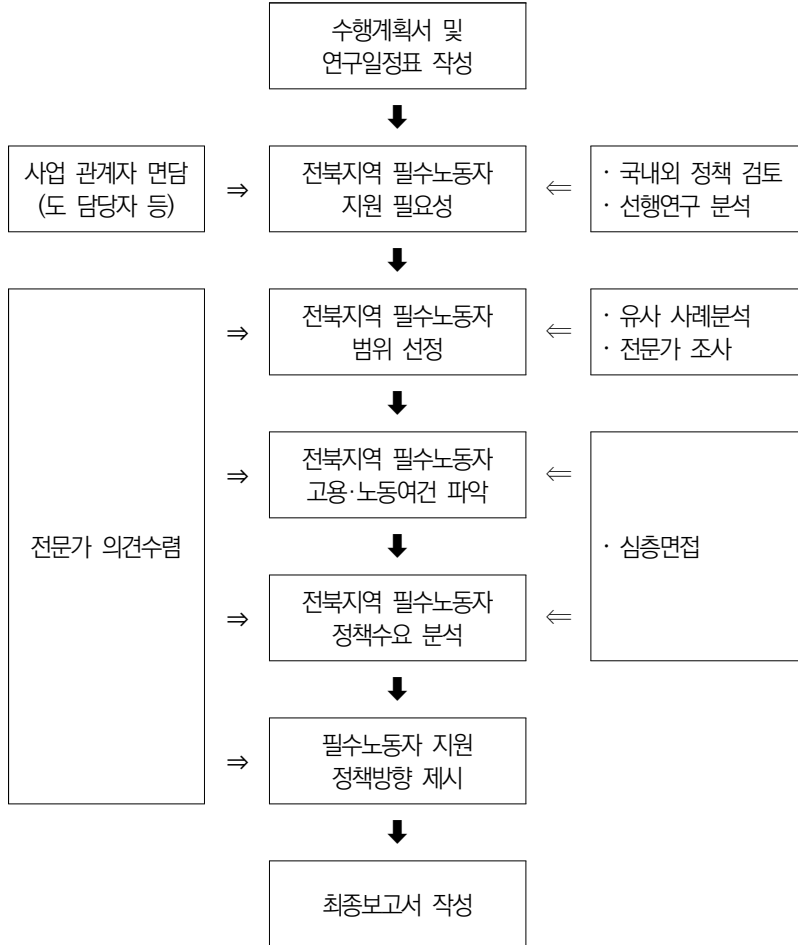
- 전북지역 필수노동자의 업종별 근로실태를 조사함으로써 고용 및 노동환경 여건을 파악함
- 필수노동자의 근무 상 애로사항 및 정책수요를 파악함으로써 정책지원의 근거를 마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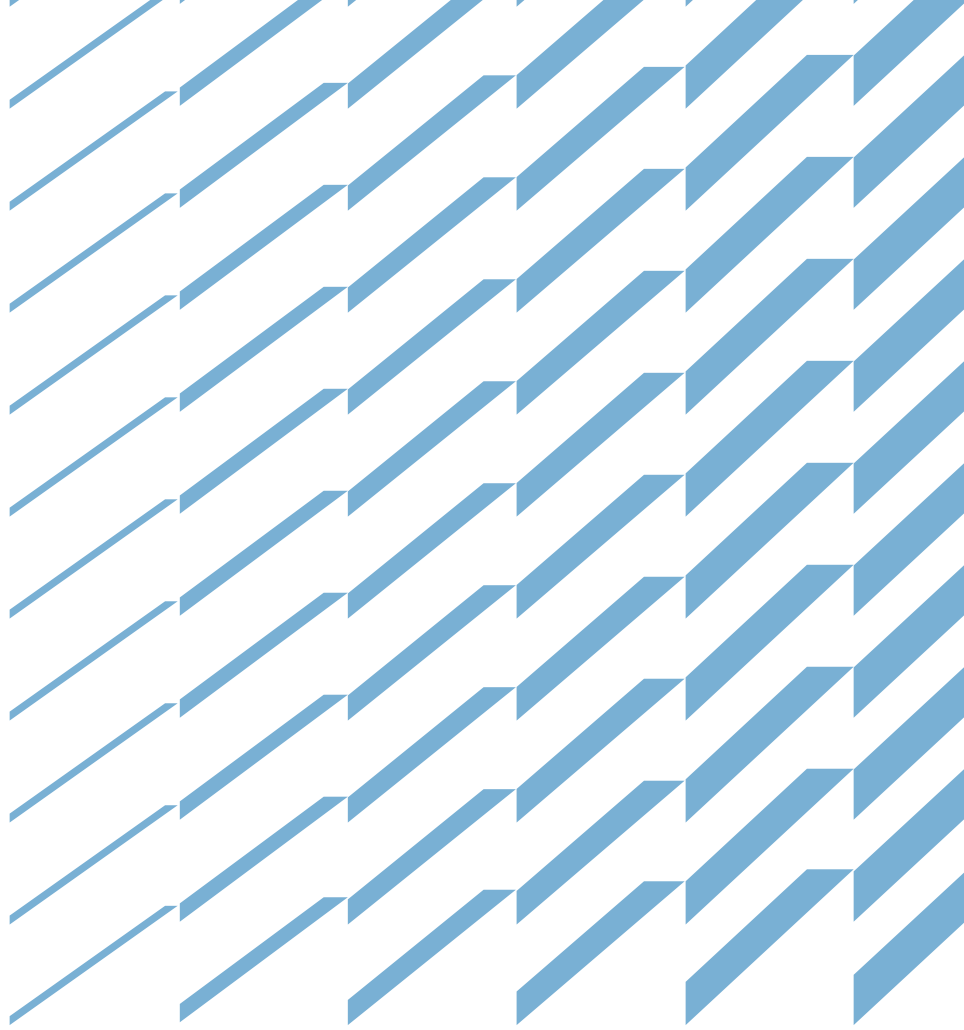
■ 다. 전북지역 필수노동자 지원 정책방향 제시

- 전북지역 필수노동자 범위 선정 결과에서 정의된 필수노동자 현황 및 정책수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방향과 지원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나. 연구 체계

[표 1-1] 연구 수행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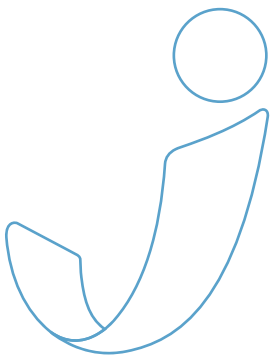




제 2 장

필수노동자 개념 및 정책 현황

1. 국제사회에서의 필수노동자 개념 및 정책 현황
2. 국내 필수노동 관련 법령
3. 국내 필수노동자 지원정책 현황



제2장 필수노동자 개념 및 정책 현황

1. 국제사회에서의 필수노동자 개념 및 정책 현황

가. 필수노동자 정의

- 필수노동자라는 용어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영국 정부가 ‘건강과 사회 돌봄의 최전방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최전방 노동자’(Frontline Worker)라고 표현하면서 전 세계로 퍼진 개념으로 핵심노동자(Key worker), 필수노동자(essential worker) 등 다양한 개념으로 사용됨
- 필수노동자에 대한 정의와 범위가 국가별로 명확히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국가 및 지역사회의 구성원에게 기본적인 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로 정리할 수 있음
- 국가별, 국제기구별 필수노동자에 대한 용어는 공통적 개념의 속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필수노동자의 어떤 속성에 초점을 두는지에 따라 상이한 용어를 사용함
 - 국가의 경제·사회·공공 핵심 업무를 강조하는 개념의 경우 필수노동자(Essential Worker)로 사용하고 대면업무를 해야 하는 경우는 최전방 노동자(Frontline Worker)로 사용
- 국가별 국제기구별 필수노동자의 개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 2-1] 국제기구별 필수노동자 정의

국제기구	정의	적용산업 범위
OECD (2020)	국가 경제의 작동과 핵심적인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직종을 필수업종(essential industry)이라 정의하고 이에 종사하는 종사자를 핵심노동자(key workers)로 정의	식품가공업, 배달업, 보건의료업
ILO (2020)	바이러스를 극복하고 인간이 갖는 기본적인 욕구 해소를 위해 일하는 노동자들이 감염국면의 최전방에 있다고 언급하고 이에 해당하는 업종을 필수노동자로 정의	보건의료 종사자, 운수 및 교통, 사회복지 관련 업무 등
Amnesty International (2020)	Covid-19 감염병 시기 동안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노동자	대중교통 종사자, 환경미화원, 식품포점 종사자, 배달서비스업 종사자 등
EU (2020)	각 산업의 필수적인 정도를 구분	식품 및 제약생산업, 공공분야(utilities), 운송업, 보건의료업, 전기통신업, 출판업 등
미국 (Blau & Meyerhofer,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와 사회의 핵심 기능 수행에 중요한 노동자를 필수노동자로 정의하였으며, 이 중 대면 업무 중심으로 하는 경우를 최전방 노동자로 정의 - 주요한 인프라의 지속을 위해 필수적인 운영 및 서비스를 수행하는 광범위한 집단 	보건의료, 통신, 정보기술, 국방, 식품 및 농경, 운수, 에너지, 공공행정 등
영국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립된 개념 - 최전방노동자를 코로나19 대응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거나 필수 공공 서비스를 공급하는 주체로 건강과 사회 돌봄의 최전방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정의 	의료관계자, 교사, 경찰, 교도관 및 관련 스태프, 심리치료사, 정신상담사 등

자료: 이승윤 외(2021)를 이용하여 재정리

- 국내에서의 필수노동자에 대한 정의는 정부차원에서 2020년 10월 ‘필수노동자 안전·보호 대책 TF’가 출범하면서 공식적으로 사용되었으며, 「필수노동자 보호·지원을 위한 대책」 및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법적 정의를 마련함

나. 필수노동자 관련 선행연구

- 필수노동자 관련 연구는 필수노동자 범위 중 돌봄노동자에 대한 논의(석재은, 2020; 박고은, 김규혜, 2021)와 필수업무 범위 및 필수노동자 범위를 제시하고 보호·지원책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이승윤 외, 2021; 장연주, 2021; 김소연, 2021)가 대표적임
- 석재은(2020)은 코로나19 국면에서 드러난 돌봄노동자의 취약성과 본질을 포착한 것을 바탕으로 정책적 대응책을 제안하였음. 코로나19 국면에서 재조명된 돌봄노동자의 실태는 제로시간 근로계약 호출노동의 너무나 ‘불안정한’ 노동; 기관 소속의 노동자임에도 적절한 지원과 안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보호 나홀로’ 노동; 필수노동자임에도 적절한 사회적 인정 및 보상이 따르지 못하는 ‘저평가’ 노동; 너무 소홀히 다뤄지는 돌봄노동자의 ‘잊혀진’ 인권으로 제시하고 돌봄의 주류화(mainstreaming of care)를 위한 돌봄정치(care politics)를 제안하는 한편, 장기요양제도 개혁을 통해 돌봄노동자의 노동권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과제들을 제안함
- 박고은, 김규혜(2021)는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 속에서 돌봄노동이라는 사회유지에 필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불가피한 대면업무를 지속하고 있는 돌봄 필수노동자에 주목하여, 이들의 일터위험 및 사회안전망 경험이 기존의 제도적 맥락 속에서 코로나19 이후 어떻게 확대 및 (재)생산되는지 분석하였음. 코로나19 이전부터 돌봄노동자는 구조화된 높은 노동강도와 높은 고용 및 소득 불안정성으로 인한 일상적인 일터위험을 경험하였으나, 코로나19 이후 일터위험은 더욱 확대되어, 보상 없는 업무범위는 더욱 확장되고 새로운 산재위험에 노출되었으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돌봄수요 변화로 인해 고용 및 소득 불안정성은 심화되었다고 지적하였음
- 이승윤 외(2021)의 연구는 필수노동자 관련 정책연구를 선도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성동구 필수노동자 실태와 지원정책’을 수립하였음
 - 위 연구에서는 필수노동자를 보육과 돌봄영역으로 집중하고, 지원 정책을 ‘근본적인 노동권·사회권 보호를 위한 정책’, ‘재난 상황시 필수노동자 지원정책’으로 구분하였으며, 이를 실행하기 위해 중앙정부-지방정부-노동센터 간 역할분담을 제시하였음

[표 2-2] 성동구 필수노동자 지원정책 제언 요약내용

구분	보육	돌봄	
		시설	방문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 개선 관련	인력배치기준 현실화		
	대체인력제도 실효성 제고	대체인력제도 마련	
	어린이집 운영의 공공성 강화 (보육교직원 통합인사체계 확립 등)		
			실업급여 실효성제고 (부분실업 인정 등)
코로나19 관련	안전수당 지급 및 방역물품지원 확대		
	인력지원(방역업무 등)		
	고용유지지원금		방문조사자 한시지원금 기준완화
			코로나19 방역 관련 이용자 대상 교육 확대

자료: 이승윤 외(2021); 김소연(2021) 재인용

- 김소연(2021)은 ‘논산시 필수노동자 실태조사 연구’에서 논산시 필수노동자 범위를 돌봄영역(사회복지, 보육, 돌봄, 방문간호사, 병원내 비의료인력), 생활영역(공동주택 경비, 방역업체, 환경미화, 재활용품선별, 한글대학 강사, 기타(시설 관리), 운송 및 물류 영역(대중교통, 택배물류)으로 나누고, 실태파악을 통해 정책방안을 마련하였음

[표 2-3] 논산시 필수노동자 실태조사 연구 요약내용

구분	내용	세부내용
시급한 지원방안	쉽의 인프라 강화	휴게시설 강화
	대체 인력 확보	
	심리상담	
	시민협조 유인책	필수노동 관련 대 시민 캠페인 시내버스 노선 및 배차시간 재조정
보호와 지원의 체계화	행정단위 구축 및 필수노동자 인력정책 개선	필수노동자 관련 별도 조직(팀) 구성 필수노동자 인력 풀 마련 대책
	필수노동자 지원기금 조성 및 집행	필수노동자 지원기금 조성 기금 집행
	(가칭)논산지역 필수노동자 회의소 추진	
	필수노동자 직종별 조직체 형성	
	필수업종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자료: 김소연(2021)

다. 필수노동자 관련 국외 정책 사례

■ 미국

- 미국 연방정부는 <표 2-4>의 20개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필수노동자로 식별하였으며, 주정부별로는 각 주별 상황으로 고려하여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침을 더하거나 제외하여 필수노동자를 식별함

[표 2-4] 연방정부 필수노동자 식별리스트

순번	부문	순번	부문
1	헬스케어/공공보건	11	정보통신부문
2	법 집행자, 공공안전, 최초대응자	12	기타 통신 중 핵심부문
3	교육	13	필수 제조업
4	먹거리 및 농업	14	유해물질 관리
5	에너지(전기전력)	15	금융서비스
6	에너지(석유)	16	화학
7	에너지(천연가스)	17	방위산업
8	수자원 및 폐수	18	상업시설
9	교통 및 물류	19	주거/보호시설, 주택 및 부동산 관련
10	공공업무 및 기반시설	20	위생제품 및 위생 서비스

자료: 이승윤 외(2021)

- 다만 이 중 주별 공통적인 필수노동자 식별 범위는 에너지, 보육 및 돌봄, 수자원 및 폐수, 먹거리 산업 및 농업, 주요 소매업(식료품, 하드웨어, 기계부품), 주요산업(건설 근로자, 전기기사, 배관공 등), 교통, 비영리단체 및 사회서비스단체 등임
- 미국의 연방정부 및 주정부별 필수노동자 관련 정책은 대부분 임금보조의 형태로 지원되고 있으며 1회 지급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필수노동자 범위 판정 시, 연방정부의 경우 상대적으로 광범위하나 주정부에서는 다소 좁은 범위 안에서 지정되고 있으며, 일부 주의 경우는 필수노동자를 식별하는 데 있어서 의료부조의 제도적 포괄범위와 연동하여 운영하였음
- 미국의 경우 현재 필수노동자 지원의 범위와 수준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임
 - 특히 미국 노동통계국 조사에 의하면 코로나19 감염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6개 분야(레스토랑, 여행과 교통, 엔터테인먼트(카지노, 공원), 개인서비스(치과, 데이케어, 이미용사), 기타 민감소매업(백화점, 자동차 딜러), 민간제조업(항공 및 자동차 제조 등)에서 임금규모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필수노동자가 당면한 사회·경제적 불안정성이 코로나19 국면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위험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있음
-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3월 경기부양책으로 1조 9,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구조 계획법(ARP Act: American Rescue Plan Act of 2021)발표함
- 미 재무부는 지난 5월 구조 계획법에 의해 조성된 코로나바이러스 주/지역 재정 회복 기금(Coronavirus State and Local Fiscal Recovery Funds)의 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Interim Final Rules)을 제시하고 있는데, 필수노동자 수당 지급에 관한 예시도 포함하고 있음(김소연, 2021)
- 미국 필수노동자의 범위는 요양원, 병원 등에 종사하는 돌봄노동자, 농업 및 먹거리 관련 업종, 위생 및 청소, 교통 및 물류, 공공보건, 보육 및 돌봄, 사회서비스 종사자 등이며, 구조계획법 기금을 활용하여 필수노동자에 대해 최대 시간당 13달러, 인당 최대 2만 5천 달러의 위험수당(premium pay)을 지급하는 안을 제시함(김소연, 2021)

[표 2-5] CARE act, HEROES act 및 ARP act 주요 내용 비교

구분	CARE act	HEROES act	ARP act
규모	2조 2,000억 달러	상동	1조 9,000억 달러
현금지원	·연소득 75,000달러 이하 개인에게 연간 1,200달러 현금 지급 ·연소득 기준 100달러 초과 시마다 지급액 5달러 감소	상동	연소득 7만5,000달러 이하 개인에서 1,400달러(부부합산 2,800달러) 현금 지급
부양가족 현금지원	·16세 미만 부양가족에 대해 인당 500달러 지급 ·24세 미만 대학생 제외	상동, 부양가족 나이제한 삭제	부양가족 1,400달러 지급
연방 실업급여	주정부 제공 실업급여에 더해 주당 600달러 추가 지급	상동	자녀 양육 및 자녀 양육비 관련 세금공제 혜택
중소기업 급여지원	·6,640억 달러 예산을 중소기업 무상대출 형태로 지급 ·급여의 75%이상 사용 조건	분기별 수익이 25%이상 감소한 200명 미만 고용 중소기업에 2차 대출 허용	중소기업 및 비영리단체 지원, 재난 대출 프로그램 지원, 식당 및 주점들에 대한 지원 등
고용유지 세금공제	·급여 지출 최대 1만 달러까지 50% 세금 공제	상동	-
학교지원	-	12학년(초교~고교)에 1,820억 달러 고등교육에 390억 달러 돌봄시설에 570억 달러 예산 편성	-
코로나19 검사 및 치료비용 지원	-	750억 달러 규모	500억 달러 규모

자료: 이승윤 외(2021), 김소연(2021) 자료를 참고하여 정리

■ 영국

- 영국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관련 필수노동자로 다음의 8개 부문의 일부 직업군을 지정하였음

[표 2-6] 영국 필수노동자 직업군

부문	직업군
보건·사회복지	의사, 간호사, 조산사, 구급요원, 사회복지사, 돌봄 노동자 등 봉사자를 포함하는 최전방 의료 및 사회복지 인력 뿐만 아니라 영국의 보건복지부문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인력; 의약품 및 보호장비 공급자 등 보건복지부문의 공급체인에 종사하는 인력 등을 폭넓게 포함
교육과 보육	보육교사 및 교사, 관련 지원 인력, 사회복지사, 기타 코로나19에도 교육 전달을 위해 활성화되어야 하는 인력
핵심 공공 서비스	사법제도 운영을 위한 필수인력; 종교계 직원; 필수적인 최전방의 서비스를 전달하는 자선단체 및 그 종사자; 사망자 관리업무 책임자; 기자 등 공영 방송 관련 직원
정부 행정 부문	코로나19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핵심 행정인력; 보조금 지급 등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군
식료품과 필수재화	식품의 생산, 유통, 판매 및 배달 인력; 그 밖의 필수재 공급을 위한 핵심인력
공공안전 및 국가 보안	경찰 및 지원인력; 국방부 공무원, 도급업자 및 군인; 소방구조인력 및 지원인력; 국가범죄수사국 직원; 국경 보안 유지 인력 및 교도소 직원 등
교통과 항공	코로나19 대응 기간에도 항공, 수상, 도로 및 철도 승객 및 화물 운송을 유지하기 위한 인력 포함; 공급망이 통과하는 운송 시스템의 종사인력 등
가스, 전기, 수도, 통신의 공공서비스와 금융서비스	필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 유류, 가스, 전기, 수도 부문 필수 인력; 정보 기술 및 데이터 기반 시설 등 종사인력; 민간 원자력, 화학 및 통신 부문 (네트워크 운영, 현장 엔지니어링, 콜센터 직원, IT 및 데이터 인프라 등 주요 서비스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우편서비스 및 배달 인력; 폐기물 처리부문 인력

자료: 이승윤 외(2021)

- 영국 정부의 필수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정책은 다음과 같이 제시함
 - 봉쇄조치(national lockdown) 및 비대면 교육에 대한 지침에도 불구하고 필수노동자의 자녀에게는 대면교육 보장
 - 보건복지 부문 필수노동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 계획
 - 웨일즈 및 스코틀랜드의 경우 돌봄노동자에 대해 특별 급여 지급

■ 독일

- 독일의 필수노동자 정의는 ‘핵심기반시설의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인 재화와 서비스인력을 공급하는 직업’임
- 연방주 차원에서의 필수노동자는 32개 분야 내에 구체적인 필수노동자 규정
 - 에너지, 식량, 금융/보험, 건강, 정보/통신, 미디어/문화, 국가/행정, 운송/교통, 수도, 기타 등
- 독일은 재난 시 국가가 직접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체계적 근간을 가지고 있으며, 코로나 봉쇄조치로 인한 손실은 국가가 직접 보상하며 기본적으로 갖춰진 안전망으로 보장됨
- 주요 지원 정책은 백신우선접종 권한 제공, 긴급돌봄 권한, 간호/요양분야 인력에게 1회 보너스 지급 등이 있음

2. 국내 필수노동 관련 법령

가. 법률 및 자치법규 현황

■ 중앙정부 법률

- 정부는 필수노동자 관련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재난 발생시 필수업무 종사자 범위를 지정하고 보호 및 지원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였음

[표 2-7]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구분	내용
제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동 법률제정의 목적 -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제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 재난, 필수업무, 필수업무종사자 용어의 정의 - 필수업무 :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 필수업무종사자 :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제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의 책무
제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설치
제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의 심의사항 -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 범위에 관한 사항 -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
제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위원회
제1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제1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태조사 및 평가
제1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재정적 지원
제1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상 등
제1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 기관 등의 협조
제1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한의 위임위탁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지자체 자치법규 현황

- 광역 및 지자체들도 필수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며, 이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의 명칭으로 구분됨

[표 2-8] 지역별 필수노동자 조례 제정 현황 종합

지역	광역 제정 여부	내용	기초자치단체수	제정	제정률
서울	-	성동구, 동대문구, 성북구, 노원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관악구, 강동구	25	13	52.0
부산	제정	중구, 영도구, 남구, 해운대구, 연제구	16	5	31.3
대구	-	-	8	-	
인천	-	미추홀구, 남동구, 서구	10	3	30.0
광주	제정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5	5	100.0
대전	-	서구, 유성구(입법예고)	5	1	20.0
울산	-	동구, 울주군	5	2	40.0
세종	-	-	1	-	
경기	제정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광명시, 평택시, 고양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하남시, 용인시, 이천시, 김포시, 광주시, 양주시, 여주시	31	16	51.6
강원	-	영월군	18	1	5.6
충북	-	진천군, 음성군	11	2	18.2
충남	제정	천안시, 보령시, 논산시, 당진시	15	4	26.7
전북	제정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 장수군, 순창군	14	6	42.9
전남	제정	목포시, 여주시, 순천시, 나주시,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22	10	45.5
경북	-	포항시, 울진군	23	2	8.7
경남	제정	창원시	18	1	5.6
제주	제정	-	2	-	
계	-	-	229	71	31.0

주 : 본청 제외, 2021.11.15. 기준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지방자치법규시스템

- 필수노동자 관련 조례 제정률은 31%임 (2021년 11월 15일 기준)

[표 2-9] 지역별 필수노동자 조례 제정 현황

지역	구분	주요 내용	구성	제정일자
서울 (13)	성동구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적용대상, 실태조사, 기본계획 수립 등, 지원 사업,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운영, 협력체계 구축, 시행규칙	15조	2020.09.10
	동대문구	목적, 정의, 적용대상, 실태조사, 기본계획수립 등, 지원 사업,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운영, 협력체계 구축, 시행규칙	14조	2020.12.31
	성북구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노무수령자의 책무, 적용대상, 필수업종의 지정,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의 수립, 지원 사업,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협력체계 구축, 시행규칙	11조	2021.03.18
	노원구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적용대상, 실태조사, 기본계획수립 등, 지원 사업,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해촉,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운영, 협력체계 구축, 시행규칙	16조	2021.03.18
	서대문구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적용대상, 실태조사, 기본계획수립 등, 지원사업,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협력체계 구축, 시행규칙	11조	2021.02.24
	마포구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적용대상, 실태조사, 기본계획수립 등, 지원 사업,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위원회 운영, 위원 수당 등, 협력체계 구축, 시행규칙	16조	2020.12.31
	양천구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적용대상, 지원계획 수립 등, 실태조사, 지원사업,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 구성 등, 협력체계 구축, 시행규칙	10조	2021.04.05
	강서구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적용대상, 실태조사, 기본계획수립 등, 지원 사업,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 구성 등, 협력체계 구축	9조	2021.05.06
	구로구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적용대상, 실태조사, 기본계획 수립 등, 지원 사업,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 구성 등, 협력체계 구축, 시행규칙	10조	2020.11.10
	금천구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적용대상, 실태조사, 기본계획수립 등, 지원 사업,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15조	2020.12.31

지역	구분	주요 내용	구성	제정일자
		위원회 운영, 수당 등, 협력체계 구축, 시행규칙		
	영등포구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적용대상, 지원계획 수립 등, 실태조사, 지원사업,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 구성 등, 협력체계 구축, 시행규칙	10조	2021.09.23
	관악구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적용대상, 실태조사, 기본계획수립 등, 지원 사업,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운영, 협력체계 구축, 시행규칙	15조	2021.02.18
	강동구	목적, 정의, 적용대상, 구청장의 책무, 기본계획수립 등, 실태조사, 지원 사업,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운영, 협력체계 구축, 시행규칙	15조	2021.03.31
부산 (6)	본청	목적, 정의, 책무, 적용대상, 지원계획 수립 등, 실태조사, 지원사업,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 설치, 위원회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운영 등, 협력체계 구축	15조	2021.01.13. (일부개정) 2021.07.07
	중구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적용대상, 실태조사, 기본계획수립 등, 지원 사업,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운영, 협력체계 구축	14조	2020.11.03
	영도구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적용대상, 실태조사, 기본계획수립 등, 지원 사업,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운영, 협력체계 구축	14조	2020.12.11
	남구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적용대상, 실태조사, 기본계획수립 등, 지원 사업,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 위원회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운영, 협력체계 구축	14조	2020.12.23
	해운대구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지원대상, 지원계획, 실태조사, 지원 사업, 위원회의 설치, 협력체계 구축, 시행규칙	10조	2021.06.02
	연제구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적용대상, 실태조사, 기본계획수립 등, 지원 사업,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운영, 협력체계 구축	14조	2020.12.24
	인천 (3)	미추홀구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적용대상, 실태조사, 기본계획 수립 등, 지원사업,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운영, 협력체계 구축, 시행규칙	15조
남동구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적용대상, 실태조사, 기본계획수립 등, 지원 사업, 필수노동자 지원	9조	2020.12.28

지역	구분	주요 내용	구성	제정일자
광주 (6)	서구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협력체계 구축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적용대상, 실태조사, 기본계획 수립 등, 지원사업,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운영, 협력체계 구축, 시행규칙	15조	2020.12.21
	본청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적용대상, 실태조사, 기본계획수립 등, 지원 사업,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협력체계 구축, 시행규칙	10조	2021.02.19
	동구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적용대상, 실태조사, 기본계획수립 등, 지원 사업,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운영, 협력체계 구축, 시행규칙	15조	2021.03.24
	서구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적용대상, 기본계획 수립 등, 실태조사, 지원 사업,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운영, 협력체계 구축, 시행규칙	15조	2020.12.21
	남구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적용대상, 기본계획 수립 등, 실태조사, 지원 사업,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운영, 협력체계 구축, 시행규칙	15조	2020.06.07
	북구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적용대상, 기본계획 수립 등, 실태조사, 지원 사업,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운영, 협력체계 구축, 시행규칙	15조	2021.02.15
대전 (1)	유성구 (입법예고)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적용대상, 실태조사, 기본계획수립 등, 지원 사업,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운영, 협력체계 구축	14조	2021.04.22
	동구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적용대상, 실태조사, 기본계획수립 등, 지원 사업,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운영, 수당 등, 협력체계 구축, 시행규칙	14조	2021.03.04
	울주군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 적용대상, 실태조사, 기본계획수립 등, 지원 사업,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협력체계 구축, 시행규칙	10조	2020.12.24
경기 (16)	본청	목적, 정의, 적용대상, 도지사의 책무, 필수노동자 지원 계획수립 등, 실태조사, 지원 사업 등, 필수노동자 지원	10조	2021.03.16

지역	구분	주요 내용	구성	제정일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협력체계 구축, 시행규칙		
	수원시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적용대상, 기본계획 수립 등, 시행계획, 실태조사, 지원 사업,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준용, 시행규칙	11조	2021.02.22
	성남시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적용대상, 실태조사, 기본계획 수립 등, 지원 사업,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준용, 협력체계 구축, 시행규칙	11조	2021.04.05
	광명시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적용대상, 실태조사, 기본계획수립 등, 지원 사업,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운영, 협력체계 구축, 시행규칙	15조	2020.12.22
	평택시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적용대상, 기본계획수립 등, 실태파악, 사업, 필수노동자 지원 심의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운영, 협력체계 구축, 시행규칙	14조	2020.12.18.
	고양시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적용대상, 실태조사, 기본계획수립 등, 지원 사업,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운영, 수당 및 여비, 협력체계 구축, 시행규칙	16조	2020.12.24
	오산시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적용대상, 기본계획수립 등, 실태조사, 지원사업,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운영, 간사, 협력체계 구축	15조	2021.03.24
	시흥시	목적, 정의, 적용대상, 시장의 책무, 실태파악, 기본계획수립 등, 지원 사업,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운영, 협력체계 구축	14조	2021.04.12
	군포시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적용대상, 실태조사, 지원계획수립 등, 지원 사업,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협력체계 구축, 시행규칙	10조	2021.07.01
	하남시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적용대상, 실태조사, 기본계획 수립 등, 지원 사업,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 설치, 위원회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운영, 수당 및 여비, 협력체계 구축, 시행규칙	16조	2021.03.12
	용인시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적용대상, 실태조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시행계획, 지원 사업,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의 설치, 위원회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운영, 수당 등, 협력체계 구축, 시행규칙	16조	2021.04.29

지역	구분	주요 내용	구성	제정일자
	이천시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적용대상, 실태조사, 기본계획수립 등, 지원 사업,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운영, 협력체계 구축, 시행규칙	15조	2021.03.22
	김포시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적용대상, 지원계획 등, 실태조사, 지원 사업, 심의·자문, 협력체계 구축, 시행규칙	10조	2021.02.19
	광주시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적용대상, 실태조사, 지원계획수립 등, 지원 사업,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협력체계 구축, 시행규칙	10조	2021.02.19
	양주시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적용대상, 실태조사, 지원계획수립 등, 지원 사업,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협력체계 구축, 시행규칙	10조	2021.04.19
	여주시	목적, 정의, 적용대상, 시장의 책무, 실태조사, 기본계획수립 등, 지원 사업,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 설치, 위원회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운영, 협력체계 구축, 시행규칙	15조	2021.06.17
강원 (1)	영월군	목적, 정의, 적용대상, 구청장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등, 실태조사, 지원 사업,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운영, 협력체계 구축, 시행규칙	15조	2021.07.02
충북 (2)	진천군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 적용대상, 실태조사, 지원계획수립 등, 지원 사업,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협력체계 구축	9조	2021.03.16
	음성군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 적용대상, 기본계획수립 등, 실태조사, 지원 사업,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운영, 협력체계 구축	14조	2021.06.07
충남 (4)	본청	목적, 정의, 적용대상, 도지사의 책무, 필수업종의 지정, 실태조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지원 사업, 위원회의 심의 등, 협력체계 구축	10조	2021.04.30
	천안시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필수노동자 지원대상 등,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실태파악, 필수노동자 심의 위원회의 설치,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운영, 포상 등, 시행규칙	14조	2021.04.15
	논산시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적용대상, 실태조사, 기본계획수립 등, 지원 사업,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운영, 협력체계 구축, 시행규칙	15조	2020.12.28
	당진시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적용대상, 실태조사, 기본계획수립 등, 지원 사업,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의	10조	2021.03.30

지역	구분	주요 내용	구성	제정일자
		설치 및 기능, 협력체계 구축, 시행규칙		
전북 (5)	전주시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적용대상, 실태조사, 기본계획수립 등, 지원 사업,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위원의 임기 등, 위원의 제척·해촉,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운영, 협력체계 구축, 시행규칙	15조	2020.12.28
	군산시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적용대상, 실태조사, 기본계획수립 등, 지원 사업,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운영, 협력체계 구축, 시행규칙	15조	2021.02.24
	완주군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 적용대상, 실태조사, 기본계획수립 등, 지원 사업,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운영, 협력체계 구축, 시행규칙	15조	2020.12.31
	장수군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 적용대상, 실태조사,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지원 사업,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운영, 수당 등, 시행규칙	15조	2021.07.01
	순창군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 적용대상, 기본계획 수립 등, 시행계획, 실태조사, 지원 사업,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운영, 협력체계 구축, 시행규칙	16조	2021.03.15
전남 (8)	순천시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적용대상, 기본계획 수립 등, 실태조사, 지원사업, 필수노동자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운영, 협력체계 구축, 시행규칙	15조	2021.02.22. (일부개정) 2021.03.31
	나주시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적용대상, 실태조사, 기본계획수립 등, 지원 사업,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운영, 협력체계 구축, 시행규칙	15조	2021.03.18
	장흥군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 적용대상, 실태조사, 기본계획수립 등, 지원 사업,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해제,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운영, 협력체계 구축, 시행규칙	15조	2021.07.19
	강진군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 적용대상, 실태조사, 기본계획수립 등, 지원 사업,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해제,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운영, 협력체계 구축	14조	2021.04.07

지역	구분	주요 내용	구성	제정일자
	해남군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 적용대상, 실태조사, 기본계획수립 등, 지원 사업,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운영, 협력체계 구축	14조	2021.03.09
	영암군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 적용대상, 실태조사, 기본계획수립 등, 지원 사업,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운영, 협력체계 구축, 시행규칙	15조	2021.02.25
	무안군	목적, 정의, 적용대상, 군수의 책무, 지원계획 등, 실태조사, 지원 사업,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운영, 협력체계 구축, 시행규칙	15조	2021.04.19
	함평군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 적용대상, 기본계획수립 등, 실태조사, 지원 사업,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협력체계 구축, 준용	10조	2021.05.11
경북 (2)	포항시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적용대상, 실태조사, 기본계획 수립 등, 지원사업,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운영, 협력체계 구축, 시행규칙	15조	2021.07.13
	울진군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 적용대상, 실태조사, 기본계획수립 등, 지원사업,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운영, 협력체계 구축, 시행규칙	16조	2021.05.24
경남 (1)	창원시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적용대상, 실태파악, 기본계획수립 등, 지원사업,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운영, 협력체계 구축, 시행규칙	15조	2020.12.31
제주 (1)	본청	목적, 정의, 도지사의 책무, 적용대상, 필수업종 지정, 실태조사, 기본계획수립 등, 지원 사업, 위원회의 심의 등, 협력체계 구축, 시행규칙	11조	2020.12.31

자료 : 자치법규시스템(접속일: 2021.11.15.)

[표 2-10] 지역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조례 제정 현황

지역	구분	주요 내용	구성	제정일자
대전	서구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구민의 책무,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설치,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운영,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업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13조	2021.07.30
경기	안양시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시민의 책무, 적용대상, 실태조사, 지원계획수립 등, 지원 사업,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운영, 수당 및 여비, 협력체계 구축, 시행규칙	17조	2021.07.09
충남	보령시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시민의 책무, 적용대상,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설치, 위원회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운영, 실태조사,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등,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	15조	2021.11.01
전북	본청	목적, 정의, 도지사의 책무,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지원 사업, 사업의 위탁, 필수업무 및 종사자 지정,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설치, 위원회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운영 등,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 시행규칙	17조	2021.08.13
	익산시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적용대상, 실태조사, 필수업무 종사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운영, 협력체계 구축	13조	2021.06.30
전남	본청	목적, 정의, 도지사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등, 실태조사, 지원 사업, 사업의 위탁,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정,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 위원회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운영, 간사,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 시행규칙	18조	2021.05.20
	목포시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등, 실태조사, 지원사업, 사업의 위탁,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정,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운영, 간사,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 시행규칙	18조	2021.09.27
	여수시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등, 실태조사, 지원 사업, 사업의 위탁,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설치, 위원회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운영, 협력체계 구축, 시행규칙	15조	2021.10.01
경남	본청	목적, 정의, 도지사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본계획 수립 등, 실태파악, 지원사업,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설치,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운영, 수당 등, 포상 등, 협력체계 구축, 시행규칙	18조	2021.11.04. (예정)

자료 : 자치법규시스템(접속일: 2021.11.15.)

나. 전라북도 필수노동자 조례 제정 현황

- 전라북도에서는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가 제정(2021. 8. 13.)됨

[표 2-11] 「전라북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 주요내용

구분	내용
제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등 조례의 목적 - 재난 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전라북도민의 안전과 생명보호, 사회기능 유지 및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제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 재난, 필수업무, 필수업무종사자 용어의 정의 재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름 - 필수업무 : 전라북도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제9조에 따라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업무 - 필수업무종사자 :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 중 제9조에 따라 도지사가 정하는 사람
제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지사의 책무
제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계획 수립(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 시책 및 제도 개선, 재원조달방안, 노동환경 개선, 인권 존중 노동문화 조성 및 확산 등)
제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태조사(필수업무 및 필수업무종사자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수준 등)
제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사업(근로조건 및 근로환경 개선, 조사연구 및 기초자료 구축,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심리상담 등)
제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위탁
제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업무 및 종사자 지정(도지사는 제9조에 따른 전라북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를 지정)
제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 설치
제1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 구성
제1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 임기
제1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의 해촉
제1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의 직무
제1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 운영 등
제1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및 홍보
제1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체계 구축
제1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규칙

3. 국내 필수노동자 지원정책 현황

가. 중앙정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정책

1) 총괄대책

- 정부는 2020년 12월 정부합동 ‘코로나19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 발표에서 필수 업무의 범위를 정하고 필수노동자 관련 지원방안 총 65개 추진과제를 수립하였음
- 필수노동자 관련 총괄 대책으로는 필수분야 방역 강화, 필수노동자 건강보호, 인력확충 및 처우개선 지원, 사회안전망 확대 등임
- 정부에서 제시하는 필수노동자 범위는 보건·의료, 돌봄서비스, 운송서비스, 환경미화, 기타업무 등 5개 분야이며, 부문별 세부업종이 포함됨

[표 2-12] 정부합동 필수노동자 보호·지원대책

추진 전략	정책 과제	
총괄 대책	① 필수분야 방역 강화	감염 취약분야 대상 방역점검 강화
		마스크 등 방역물품 지원 확대
	② 필수노동자 건강보호	휴게·샤워시설 등 위생시설 확충 지원
		건강진단 확대 및 직종별 건강진단 신설
	③ 인력확충 및 처우개선 지원	분야별 인력확충 및 고용장려금 지급
		방문돌봄 종사자 등 한시 생계지원 실시
	④ 사회안전망 확대	특고종사자 적용 등 전국민 고용보험 적용
		전속성 요건 폐지 등 산재보험 확대 적용
분야별 맞춤형 지원방안	① 보건·의료	① 간호인력(교육전담, 긴급소요 등) 확충 ② 의료인력에 대한 방역지원, 교육 등 실시 ③ 민간 파견 의료인력 위험수당 지급 등
	② 돌봄서비스	① 시설인력(3,127명), 보육교사(6천명) 등 인력 총원 ② 시설별 대응매뉴얼 마련, 요양시설 근로감독 등 ③ 종사자 보수 인상, 방문돌봄종사자 등 지원금 지급 ④ 공공(사회서비스원법)·민간(가사근로자법) 돌봄체계 개편
	③ 운송서비스	① 버스기사 훈련 지원, 대리기사 보험부담 경감 등 ② 배달종사자 안전보호 및 정비·보험료부담 완화 ③ 화물기사(온라인유통업체 배송, 대형화물, 택배 등) 보호
	④ 환경미화	① 3인1조 안전작업기준 준수 실태조사 실시 ② 시설·차량 등 안전 개선, 직종별 건강진단 실시 ③ 의료폐기물·재활용품 등 수거·선별지원금 인상
	⑤ 기타 업무	① (콜센터) 상담원 휴게·휴가 보장 등 근로감독 실시

자료: 정부합동 (2020. 12 .14.) 필수노동자 보호·지원대책

나. 지방정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정책

1) 서울시¹⁾

가) 추진배경

- 재난 상황에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의 중요성 및 보호 필요성 부각



- 코로나19 장기화로 필수노동자의 업무량과 노동 강도 증가 및 감염병 노출, 건강악화 등 산업재해 위험 가중
- 필수노동자의 상당수는 불안정한 고용형태, 불명확한 업무범위, 인력 부족 및 열악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어 실태파악 및 지원방안 마련 시급

나) 추진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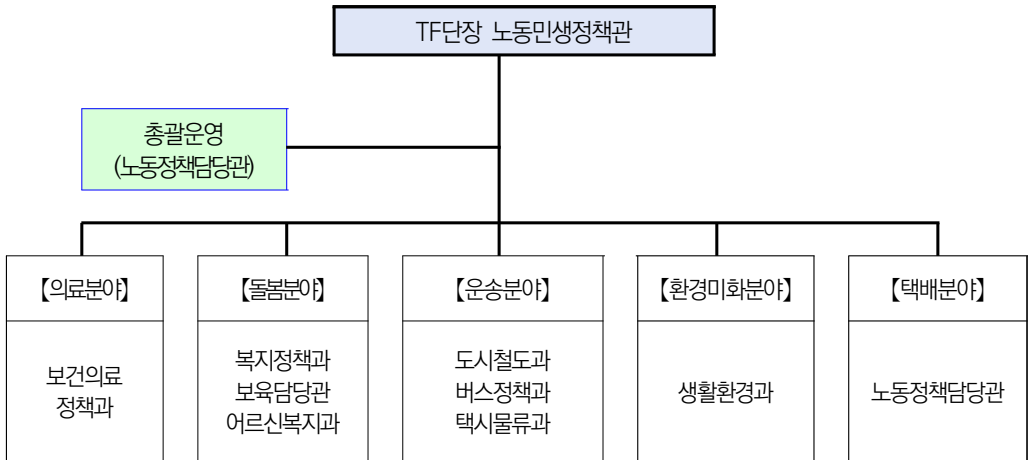
■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2020.12.): 정책의 추진력 확보

- (목적) 재난상황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 노동자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지원 및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
- (내용) 필수노동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저소득 필수노동자 지원, 필수노동자 실태조사, 필수노동자지원위원회 설치 등
- 필수노동자 전담부서 신설 : 정책의 체계적 추진

1) 「제2차 서울시 노동정책 기본계획(2022~2026)」 중 필수노동자 지원방안을 발췌하여 작성

필수노동지원팀	역 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기: '20년 12월 신설 형태: 노동정책담당관 內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수노동자 등 사각지대노동자 지원대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건·의료, 돌봄, 교통·운수, 택배 등 실태조사 필수노동자보호법안 및 관련 조례안 후속조치 플랫폼·프리랜서 지원 대책 및 가이드라인 마련 필수/플랫폼노동자 노동현장 점검 및 유해요인 등 조사 필수노동자 간담회 및 워크숍 등 현장 소통

■ TF 구성·운영 : 필수노동자 구체적 지원방안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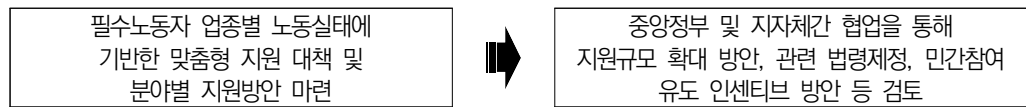
- (역할) 필수노동자 업종별 지원 방안 제안 및 구체적 실행방법 논의
- 분야별 운영 기관 등을 활용한 현장의 목소리 청취
- 고용노동부 등 정부 및 정책 실행 접점인 자치구 등과 지속적인 협력

■ 필수노동자 현황 및 근무환경 실태조사 용역 추진

- (대상) 서울시 관내 ①보건·의료·돌봄종사자 ②교통·운수종사자 ③택배종사자
- (기간) '20년 12월~'21년 6월 (7개월)
- (방식) 노동자 및 사업주 대상 설문조사 및 인터뷰
- (내용) 필수노동자 업종 지정을 위한 현황 파악 및 근무환경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현황 : 업종별 노동자 규모(성별통계 포함), 근무형태, 근무지 등 ❖ 노동환경 : 노동조건(임금체계, 근무시간), 노동환경(휴게시설, 작업 공간 등), 처우, 재해상황 전후의 노동강도,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 대책 등
--

- (활용)



■ 필수노동자 작업환경 방역 및 건강보호 강화

- (방역확대) 필수노동자 작업 및 휴게시설 내 방역강화(자치구 협조), 손소독제, 마스크 등 방역물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년 배달/택배노동자 등 필수노동자 대상 마스크 약316만장을 추경예산으로 지급하였으며, '21년 이후에도 피해상황에 따라 추경 등 편성을 통해 지원추진 계획
--

- (건강보호)

<table border="1"> <tr><th>신 체</th></tr> <tr><td>건강검진(공단) 및 입원 (외래포함)시 ⇒ 서울형 유급병가 적용</td></tr> </table>	신 체	건강검진(공단) 및 입원 (외래포함)시 ⇒ 서울형 유급병가 적용	+	<table border="1"> <tr><th>정 신</th></tr> <tr><td>스트레스, 정신적 소진 등 관련 심리상담 및 치유프로그램 연계 ⇒ 감정노동종사자권리보호센터</td></tr> </table>	정 신	스트레스, 정신적 소진 등 관련 심리상담 및 치유프로그램 연계 ⇒ 감정노동종사자권리보호센터
신 체						
건강검진(공단) 및 입원 (외래포함)시 ⇒ 서울형 유급병가 적용						
정 신						
스트레스, 정신적 소진 등 관련 심리상담 및 치유프로그램 연계 ⇒ 감정노동종사자권리보호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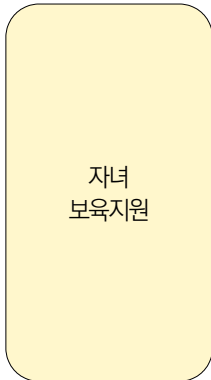
※ 서울형유급병가 미적용노동자는 향후 녹색병원 등과 연계지원 방안 검토

- (환경개선) 청소노동자 휴게환경(위생시설 등) 개선 지원

- '20년 220개소 완료, '21년 신청자치구 대상 지속 지원

■ 야간시간 가족(유아, 어르신 등) 돌봄 서비스 지원

- 3교대 근무(코로나19 의료진 등), 돌봄(야간 요양보호사) 등 업종 중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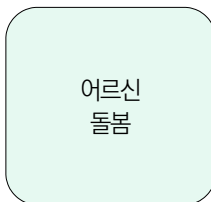
❖ 야간보육 어린이집 이용 지원 추진

- 대상: 6개월~만 6세 미취학아동대상 입소 안내 및 연계

형 태	운영시간	개소
거점형	16시~21시 30분	166
야간연장	19시 30분~0시	2,050
24시간보육	7시 30분~익일 07시30분	27

❖ 가족 친화 프로그램 참여 지원

- 부모-자녀 맞춤형 체험 및 힐링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구별 심리상담센터 연결 자녀상담 지원



❖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 데이케어센터 이용 지원 추진

- 내용: 야간운영(18시~22시) 입소 안내 및 연계
미술, 음악, 원예치료 등 전문프로그램 제공

❖ 돌봄SOS센터 이용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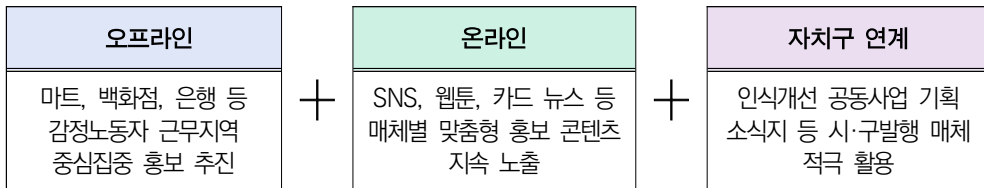
- 대상: 감염병 등으로 인한 돌봄공백 발생시 이용 연계 추진

■ 필수노동자 심리상담 및 치유프로그램 참여 지원

- (내용) 정신적 소진이 심한 돌봄 및 보건·의료 종사자 등 대상 집중 심리 컨설팅
- (방법) 전문 심리상담사(감정노동종사자권리보호센터) 1대 1 심리상담 진행
- 치유프로그램 참여 및 區 정신건강증진센터 연계
- (확대) 시범추진('21년) 후 노동안전보건센터 내 전용상담창구 설치('22년)

■ 필수노동자 인식개선 대시민 캠페인 실시

- (내용) 필수노동자의 정의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시민관심 유도



- 연차별 추진계획

주요지표	계	2020	2021	2022	2023	2024
필수노동자 지원방안 마련	-	실태조사 조례제정	TF구성 지원방안 마련	추진	추진	추진
필수노동자 실태조사	1,000	300	100(추경)	150	200	250

■ 필수노동자 관련 주요 정책

- 플랫폼 배달종사자 민간 상해보험 단체가입 지원
 - 내용 : 서울시가 보험료 전액부담을 통해 민간상해보험 보장 지원
 - 지원기간 : 2021년 9월 ~ 2022년 8월(1년 간)
 - 세부내용 : 손해보험사를 공개 모집하고 선정 절차를 거친 후, 배달업무 중 사고로 상해를 입은 자에게 교통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골절진단비, 상병수당 등 보장보험 단체가입 지원
- 서울지역 플랫폼 노동자 및 프리랜서 노동실태 조사
 - 내용 :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불안정한 법적지위, 낮은 소득 등 노동권익 사각지대 해소책 마련
 - 세부내용 : 서울지역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실태를 조사하고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 모색 (2021년 2월 완료)
- 택배노동자 현황 및 근무환경 실태조사 및 종합대책 마련

- 기간 : 2020년 12월 ~ 2021년 6월

- 내용 : 노동실태조사,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한 보호 및 지원정책 마련

○ 아파트 경비노동자 권리구제 전담 신고창구 운영

- 지원내용 : 노무 상담 및 부당해고, 임금체불, 입주민 및 관리사무소 갑질 등 피해 상담

- 심리상담 : 스트레스, 불안감 등 정신적 피해 심리 상담 및 치유프로그램 연계

○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 내용 : 서울시 청소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개선

- 세부내용 : 청소노동 휴게시설 가이드라인 준수 등 휴게시설 일제 점검, 코로나19 관련 분청 및 사업소, 민간 청소노동 휴게시설 방역 점검

2) 충청남도²⁾

가) 필요성

- 코로나 장기화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보건의료 및 돌봄서비스 종사자, 사회기능 유지를 위한 택배·배달, 환경미화 종사자 등 필수노동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

나) 사업 내용

- 사업기간 : 2021.3.~2021.12.(1년간)
- 사업대상 : 충청남도내 필수노동자
- 사업비 : 30백만원(※2021년도 예산액)
- 주요내용 :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대책 마련

2) 안수영(2021) 연구내용 발췌

다) 충청남도 필수노동자 현황 : 59,467명

부문	규모
보건·의료	11,522명(의사 3,225, 간호사 6,033, 약사 1,424, 한의사 840)
택배	2,334명(전국 55,377)
어린이집	14,886명(원장 1,720, 보육교사 10,088, 조리원 801, 기타 등 2,277)
사회복지시설	29,115명(8,775개소)(전국 8.3만명)
환경미화	1,610명(직영 1,099, 위탁 511 / 전국 33,950)
계	59,467명

라) 2021년 추진계획

- 필수노동자 안전 및 보호강화를 위한 현황 파악 및 지원정책 검토
 - 택배·배달, 쿠팡서비스 등 특고종사자에 대한 표준계약서 도입·확산
-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한 사회적 공론화 및 노동권익센터 권익보호 지원
-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추진체계 제도화 적극 참여
 - 「충청남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필수노동자 지원 도 및 시군구 위원회 설치 지원

3) 경기도³⁾

■ 필수노동자 관련 주요 정책

- 노동권익센터 설립
 - 노동권익센터는 노동 법률 상시 상담을 지원하고,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맞춤형 근로권 보호교육을 추진하며 지원 서비스를 홍보함(경기도노동권익센터, 2022)
 - 또한, 도(센터, 단체)와 시군(복지시설, 단체)간 협력 소통 네트워크를 구축함

3) 장연주 외(2021) 연구내용 발췌

○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 사업기간 ; 2021.4 ~ 2021. 12.
- 사업대상 : 배달업무 종사자
- 내용 : 산재보험료 노동자부담금 90% 최대 1년간 지원

○ 경기도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 근거 : 「경기도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 사업대상 : 산업단지 내 및 이동노동자들의 접근성이 좋은 지역
- 내용 : (설치비) 신축인 경우 최대 10억 원, 리모델링인 경우 최대 3억 원 / (운영비) 2년간 0.1억 원

○ 취약노동자 조직화 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21. 4 ~ 2021. 12
- 사업비 : 250백만원 (5개 사업 각 50백만원)
- 사업대상 : 플랫폼 노동 종사자, 비정규 노동자 등 노동조합 가입이 어려운 취약노동자
- 내용 : 취약노동자들이 자조모임을 결성하여 공제조합 등 이익대변단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업종형, 지역형 구분하여 총 5개 사업 지원

[표 2-13] 경기도 필수노동자 관련 주요 정책

정책	사업 내용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 노동정책과 노동권익개선팀의 직제를 변경하여 경기도노동권익센터를 신설함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재보험료 지원 : 1년간 2,000명, 노동자 부담금 90% 지원 • 안전교육 및 안전캠페인 : 이륜자동차 실기교육, 안전교육, 캠페인 실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점쉼터 및 간이이동노동자 노동자 쉼터 설치 • 거점쉼터에 건강·노동·복지·일자리 등 전문 상담 및 교육 강화
취약노동자 조직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노동자 조직화 지원 : 자조모임 결성, 모임 간 포럼/연대활동 지원
취약노동자 노동권익 보호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모니터링단 및 갑질피해지원센터 운영

자료 : 장연주 외(2021)를 가공

4) 광주광역시

■ 필수노동자 관련 주요 정책

○ 이동노동자 달빛쉼터 개소

- 근거 : 「광주광역시 노동자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2020.04.01.)
- 사업대상 : 대리기사, 택배, 쿠팡,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이동노동자
- 사업비 : 150백만원
- 2018년 예산 : 120백만원 (인건비 61백만원, 시설운영비 61백만원)
- 사업내용 : 남녀 전용 휴게실, 교육·회의실, 당비실 마련

○ 택배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2020.12.15.)

- 안전 및 보건을 위한 시설,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와 정책 개발, 권익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택배노동자 지원 근거를 마련



이용대상 : 이동노동자면 누구나

대리기사, 택배, 쿠팡,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자료 : 광주시노동센터(2022)

[그림 2-1] 광주광역시 이동노동자 쉼터

5) 제주도

■ 필수노동자 관련 주요 정책

○ 이동노동자 혼디쉼팡 운영 및 확대 조성

-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이동노동자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2021.11.23.)
- 사업대상 : 대리기사, 퀵서비스, 택배, 학습지교사 등 9개 업종 특수형태근로자
- 사업비 : 500백만원
- 2022년 예산 : 혼디쉼팡 확대 조성 2개소(제주시 1, 서귀포시 1) / 1,043백만원
- 사업내용 : 사무실, 남녀휴게실, 상담실, 교육실 마련



자료 : 제주이동노동자 혼디쉼팡(2022)

[그림 2-2] 제주 이동노동자 혼디쉼팡



제 3장

전라북도 필수업무 및 필수노동자 범위 설정

1. 필수업무 범위 기준 설정
2. 우선지원 필수노동자 도출



제3장 전라북도 필수업무 및 필수노동자 범위 설정

1. 필수업무 범위 기준 설정

가. 필수업무의 속성

-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공유하는 필수노동자의 핵심적 속성은 공공성(공익성)과 대면성으로 수렴됨
- 필수노동자를 정의하는 첫 번째 속성인 공공성(공익성)은 사회, 가구 및 개인의 기초적인 삶이 유지되는데 있어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와 생산품을 제공하는 노동자임을 나타냄
- 두 번째 속성인 대면성은 노동 현장에 물리적으로 나타나야만 하는 노동자로 불가피하게 대면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경우임
-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필수노동자는 공공성과 대면성을 가지는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정의하고자 함

나. 필수업무 범위 설정 기준

1) 법률에 규정된 필수업무

- 필수노동자법에 의하면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재난의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업무 또는 사회의 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업무인지에 대한 판단이 우선되어야 함⁴⁾

■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업무

- 의료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업무
- 질병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한 의료시설, 의료기기, 의약품 생산 및 공급과 관련된 업무
- 방역, 응급구조, 환자이송 등 공공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업무
- 농산물, 식료품 등 생필품의 생산 및 공급과 관련된 업무

■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업무

- 버스, 택시, 기차 등 대중교통 수단 운행 업무
- 택배, (음식)배달 등 운송 및 물류 관련 업무
- 영유아,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 업무
- 유치원, 학교 등 교육서비스 제공 업무
- 가사노동 서비스 제공 업무
- 쓰레기 수거, 재활용 등 환경미화 관련 업무
-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서비스 제공 업무

4) 장연주 외(2021)자료를 발췌하여 작성

[표 3-1] 필수업무에 해당하는 필수노동자 후보군

필수업무	필수노동자 후보
의료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 간호사 및 의료기관 종사자 • 간병·요양시설 종사자 • 정신건강 상담사
의료시설, 의료기기, 의약품 등 생산 및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시설 및 의료기기 생산 및 공급업체 종사자 • 제약회사 종사자 • 감염병 등 관련 연구자
방역, 응급구조, 환자이송 등 공공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역 및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공공서비스 종사자 • 청소 및 방역업체 종사자 • 119 구급대원 • 응급차(앰블런스) 운행 종사자
생필품 생산 및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민 • 식품업체 종사자 • 식료품 판매 관련 종사자 • 기타 생필품 생산 및 공급과 관련한 업무 종사자
대중교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버스 기사 • 택시 기사 • 철도운송 관련 기관 및 사업 종사자
운송관련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택배 기사 • 음식 등 배달 라이더 • 상품 배송 관련 콜센터 직원
사회적 약자 돌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방문 돌봄 노동자 •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 어린이집 등 보육교사
교육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등 교사 및 교직원 • 방과후학교 선생님 및 어린이 돌봄교실 등 종사자 • 학원 종사자
가사노동 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사노동 종사자
환경미화 관련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미화원 • 쓰레기 수거 및 재활용 업체 등 종사자 • 민간 방역업체 종사자
사회보험 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관련 업무 종사자

자료: 장연주 외(2021), p.43

2) 국내외 필수업무 정의에서의 필수업무

- 국제적으로 합의된 필수업무 및 필수노동자 정의는 OECD에서의 정의를 기준으로 하자 함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OECD에서 논의된 필수업종은 식품가공업, 배달업, 보건 의료업 3개 분야임
- 우리 정부의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총괄대책(관계부처합동, 2020.12.14.)에 의하면 코로나19 상황에서의 필수업무 범위는 다음 5개 분야로 설정함
 - 보건·의료, 돌봄서비스, 운송서비스, 환경미화, 콜센터 등 기타업무
- 광역 및 지자체에서의 필수업무 범위는 정부차원에서 논의된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지역의 상황적 특성에 맞추어 정부 기준에서 가감하는 형태임

[표 3-2] 지역별 필수업종 및 직업

지역	필수업종 및 직업
정부	- 보건의료, 돌봄(노인, 아이), 운송(택배, 버스기사, 대리기사, 배달종사자, 대형화물차주), 환경미화, 교육, 기타(콜센터 등) (고용노동부, 2021)
서울	- (서울시 재난 유형별 필수노동자 지원 정책 연구 용역 진행 중, 연구기간: 2022.01.03. - 2022.09.02.)
부산	- 보건의료, 돌봄, 배달업, 환경미화원, 제조·물류·운송·건설·통신 등 대면 노동자 (김소연, 2021) -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환경미화원 (부산노동권익센터, 2020, “코로나19로 인한 필수노동자 노동피해 실태조사”)
광주	- 보건의료, 사회복지 및 돌봄, 배달, 택배, 경비, 청소노동자 등 (광주전남연구원, 2021)
강원	- 돌봄, 보건, 운송, 환경미화, 콜센터 (강원연구원, 2021)
경남	- 보건, 의료분야 노동자(간호직, 운영지원인력, 시설관리 노동자), 돌봄노동자 (노인, 아동, 장애인 돌봄 시설 종사자 및 방문돌봄 노동자), 택배노동자(택배기사, 분류지원인력), 음식배달노동자 (경남연구원, 2021)
제주	- 택배, 대리운전자
서울 성동구	-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돌봄 및 보건서비스 종사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건물관리원 및 검표원, 매장판매 종사자 (이승윤 외, 2021) - 복지·돌봄 분야(요양보호사, 생활복지사), 보육(보육교사, 조리사, 보육도우미 등), 공동주택(경비, 청소노동자), 운송(마을버스 운전 종사자), 보건의료(청소, 경비, 급식 등 의료지원 종사자) (성동구, 2021, “2021년 필수노동자 지원사업 추진 계획”)

지역	필수업종 및 직업
서울 강서구	- 돌봄분야(요양보호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아이돌보미, 보육교사), 보건의료(병원시설관리), 교통/운수(마을버스 기사), 환경/미화(생활폐기물 수거), 기타(아파트 경비원) (강서구, 2021, “강서구 필수노동자 현황 및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 보고”)
서울 금천구	- 의료지원·방역인력, 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보육교사·노인돌봄종사자, 환경미화원·경비원, 마을버스기사·콜센터상담원 등 (금천구, 2021, “금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기본계획”)
충남 논산시	- 보건의료분야(병, 의원, 요양병원, 방역업체, 방문간호사) 돌봄분야(노인복지센터, 노인맞춤돌봄 생활지원사, 요양시설, 지역아동센터, 아이돌보미 및 산모/신생아 돌보미, 장애인활동지원사), 보육분야(어린이집 보육교사), 교통·운송 분야(시내버스, 전세버스, 택배기사, 배달대행기사, 택시기사), 환경미화(의료폐기물 수집·운반원, 산업폐기물 수집·운반원, 환경미화원, 재활용품 선별원), 공동주택 분야(경비원), 기타 분야(한글대학 강사, 생활배움터 강사, 주민자치프로그램강사, 운동프로그램 강사, 문화해설사) (김소연, 2021)
인천 남동구	- 대중교통 운전자, 의료·사회복지·돌봄 종사자, 물류·배달업 종사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

자료 : 지역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고용노동부 “필수노동자 보호 지원대책 (2021.08.19.)”, 이승윤 외(2021)

3) 노동 현장에서 요구되는 필수업무⁵⁾

- ‘현장노동자의 요구’라는 제목으로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필수업무 범위 및 직종은 다음과 같음

[표 3-3] 필수노동에 포함되어야 할 직종

분야	직종
의료	방문간호사, 감염담당 간호사, 선별진료소 공무원
사회서비스	간병노동자, 입소시설 요양보호사, 재가요양노동자, 장애인활동지원사, 사회서비스원 노동자, 노인생활지원사,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민간위탁 사회복지노동자, 거주시설, 5인미만 시설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아이돌봄노동자, 코로나생활치료시설노동자
운수	노선버스(시내, 마을, 농어촌), 시외, 고속버스 운전노동자, 철도지하철 역무원(역무원, 보안관, 역사청소노동자 등)
물류	유통분야 화물운송노동자, 택배노동자, 배달노동자
공공서비스	환경미화노동자(폐기물수집운반, 폐기물 선별, 소각, 매립, 음식물처리), 시설청소노동자, 수도, 가스, 전기 검침원, 콜센터, 민원담당자, 안내노동자, 장례지도사, 요금수납(매표, 톨게이트, 주차 등), 현업노동자(도로보수, 시설관리, 경비 등)
교육	유초등학교 돌봄전담사

5) <민주노총 2020.11 코로나 19 대응 필수노동자 보호 민주노총 요구안 1>

4) 전라북도 지역산업 연관성

- 전라북도 차원의 필수업무 지정의 관점은 지역산업과의 연관성도 논의의 범주에 들어 가야 함
- 필수업무는 지역 주요산업 육성과 지역경제·사회 운영에 중대한 역할을 하기 때문임
- 전라북도 주요 산업은 자동차, 조선, 기계, 농생명 등 주력산업과 탄소·수소·재생에너지 등 신산업을 들 수 있음

다. 본 연구에서의 필수업무 범위 및 필수노동자 현황

1) 필수업무 범주 논의 관련 종합정리

- 본 연구에서 전라북도 필수업무의 범위를 논의하기 위해 법률상 정의, 업무의 대면불가피성, 국제적 논의(OECD), 국내 논의(정부차원), 노동현장의 요구, 전라북도 지역산업과의 연관성을 기준으로 정의한 필수업무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음

[표 3-4] 필수업무 범주 논의 종합

	법률상 정의	OECD	국내 논의	노동현장	지역산업
교육	○		○	○	
보건·의료	○	○	○	○	
복지·돌봄	○		○	○	
운수·물류	○	○	○	○	
환경미화	○		○	○	
콜센터			○		
식품 생산·가공	○	○			○
에너지					○

2) 본 연구에서의 필수업무 범위 및 필수노동자 현황

- 앞서 살펴본 법률에 규정된 필수업무 범위, 대면업무가 필수적인 업무, 국내에서의 논의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 필수업무로 논의될 수 있는 분야는 교육, 보건·의료, 복지·돌봄, 운송·물류, 환경미화, 콜센터, 식품 생산·가공, 에너지(재생) 8개 영역임
- 이 중 현재의 감염병 확산의 위기에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사회기능 유지, 대면성의 불가피성을 모두 충족하는 분야는 교육, 보건·의료, 돌봄, 운송·물류, 환경미화, 식품 생산·가공 등 6개 분야로 설정함
- 필수업무로 설정된 6개 분야 중 대면성이 불가피한 업무를 중심으로 표준직업분류 중 분류 기준에 따르면 22개 분야의 노동자가 전라북도에서의 필수노동자 정의의 대상 범위에 해당됨
- 위의 기준에 따라 전라북도 필수노동자 규모를 추정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통계분류 기준 직업별 노동자 수를 사업체조사 종사자 수와 교차 추정한 결과, 전라북도 필수노동자 규모는 약 21만 2,620명임
- 본 연구에서의 논의 대상인 필수업무 범주로 지정된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경우 운송·물류, 환경미화 종사자를 제외한 4개 범주의 종사자 비율이 전국보다 높음

[표 3-5] 본 연구에서의 필수업무 및 필수노동자

필수업무	필수노동자
교육	대학교수·강사 학교교사 유치원교사 문리·기술·예능강사 장학관 및 기타교육종사자
보건·의료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간호사 영양사 의료기사, 치료사, 재활사 보건의료종사자
돌봄	돌봄서비스 종사자(노인, 영유아)
환경미화	청소·방역·가사서비스원 검침·주차관리 및 기타서비스종사자
운송	항공·철도·선박 조종사 및 관제사 자동차운전원 물품이동장비 조작용 택배원 및 기타운송종사자
식품 가공생산	제과제빵 및 떡제조원 식품가공기능원 식품가공기계조작용원

[표 3-6] 전라북도 필수노동자 현황(2021년 상반기 기준)

(단위: 명, %)

구분	전북		전국	
	규모	비율	규모	비율
교육	60,329	28.4	1,598,060	27.3
보건·의료	46,587	21.9	1,176,101	20.1
돌봄	46,175	21.7	1,025,223	17.5
운송	31,617	14.9	1,112,559	19.0
환경미화	14,494	6.8	726,332	12.4
식품 가공생산	13,418	6.3	2,131,37	3.6
계	212,620	100.0	5,851,412	100.0

2. 우선지원 필수노동자 도출

가. 우선지원 분야 도출을 위한 AHP 분석 절차

- 앞에서 논의한 필수업무 분야(22개 업종)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모든 노동자가 전라북도 차원의 필수노동자라고 볼 수는 없음
- 이는 필수업무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들 중에서 직무 및 직종에 따라 고용여건이나 처우, 또는 사회안전망 수준이 다르기 때문임
- 따라서 22개 분야의 필수노동자 중 정책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기 위해 도내 전문가를 대상으로 AHP 분석을 실시함
 - AHP 분석이란 의사결정의 전 과정을 다단계로 나눈 후, 가중치를 산정하여 단계별로 분석, 해결함으로써 결정적인 의사결정에 이르는 것을 지원하는 접근방법의 하나로써 정성적 요소를 포함하는 다기준 의사결정에 널리 이용되고 있음

1) 계층화 구조 및 평가 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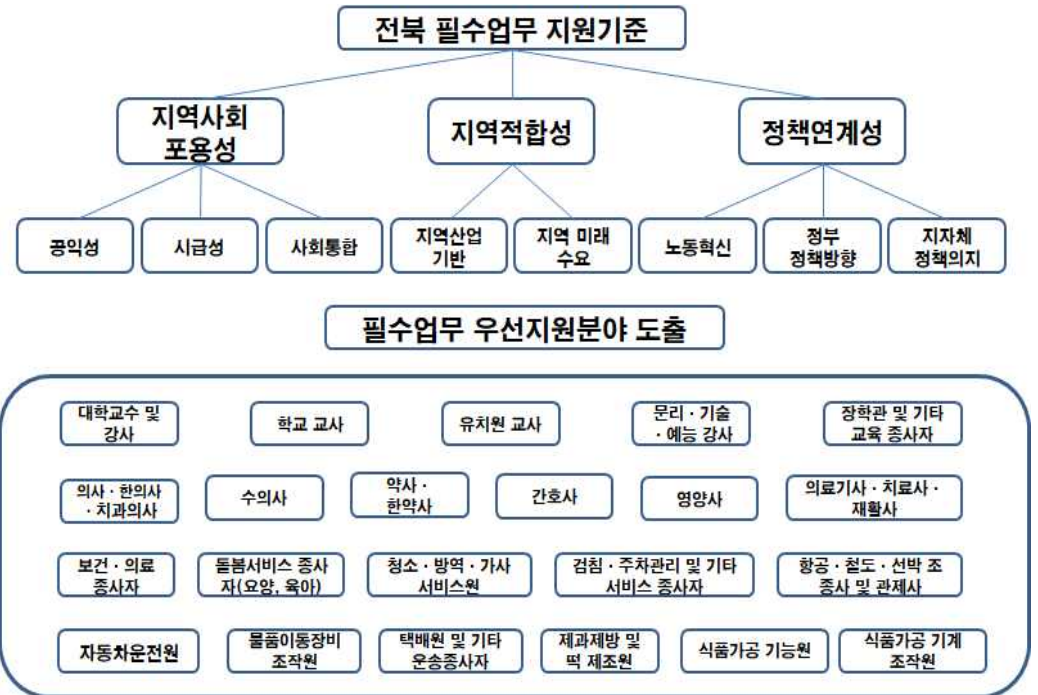
- 평가기준의 계층구조는 제1계층과 제2계층으로 구분하여 기본 모형을 설계하였으며 국내에서 발행된 기존 연구⁶⁾와 자문회의 등을 통해 평가요인을 선정⁷⁾
- 필수업무와 필수노동자의 지정은 어떤 일인가? 누가하는가? 지역 경제·사회에 중요한가? 등을 고려함
- 우선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를 도출하기 위한 단계적 계층구조와 각 항목에 대한 평가기준 및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제1계층은 포용성, 지역적합성, 정책연계성 등으로 구분하였고 이를 특성별 요인에 따라 제2계층으로 나눔
 - 제2계층의 세부특성은 공공성, 시급성, 통합성, 지역산업기반, 지역미래수요, 노동혁신, 정부정책 연계, 지자체 정책의지 등 9개 하위특성으로 구성하였음

6) 주수현 외(2009), 김기희(2012), 김수은·안동신(2016)의 연구를 참고

7) 국내에서는 공공성이나 대면성의 속성 외에도 고용여건과 사회안전망 등에서 취약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음

[표 3-7] AHP 분석 계층구조

제1계층	제2계층	내용
포용성	공공성	국민의 생명, 사회기능 유지를 위한 업무인가?
	시급성	대면성이 높은 업무로 감염병에 취약성을 가지고 있어 보호와 지원이 시급한 분야인가?
	통합성	고용 및 사회안전망이 취약하여 지자체 차원에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한 업무인가?
지역적합성	지역기반	타분야에 비해 현재 도내 종사자 비중이 높은 업무인가?
	미래수요	향후 도내 수요가 확대될 업무인가?
정책연계성	노동혁신 기여	지원정책에 따라 지역노동에서의 혁신이 유도되는 분야인가?
	정부정책 연계	정부 필수노동자 지원대책과 연계하여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업무인가?
	지자체 정책의지	지자체차원에서 정부정책을 보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는 업무인가?



[그림 3-1] 평가항목의 계층구조

2) 조사과정

- 도내에서 우선 지원이 필요한 필수노동자를 판정하기 위해 수행되는 AHP 분석을 위한 조사대상자는 노동정책 연구 또는 노동정책 관련 활동가로서 필수노동자 정책 및 법률·조례의 도입 취지 등에 충분한 지식을 가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함
- 설문대상 전문가는 도내에서 연구와 평가 등에 있어 경험이 있는 노동정책 관련 교수 및 연구자, 노동정책 관련 중간지원조직 사업담당자 및 활동가 등임
- 전라북도 필수업무 우선지원 분야 도출을 위해 도내 전문가 10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1단계와 2단계 신뢰도 검증을 실시함
- 각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상대적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설정하고 항목별 평점을 내어 합산한 종합점수를 비교하여 점수가 높은 대안의 순위별로 우선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를 판정함
- 단계별 신뢰도 검증결과 C.R⁸⁾ 값이 0.016으로 일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나. AHP 적용 중요도 산출

1) 제1계층 구조의 요인별 중요도 산출

- 제1계층에서 3가지 특성으로 분류된 항목에 대한 전문가 평가는 공공성, 시급성, 통합성의 순서로 이루어짐
- 이 중 포용성의 가중치가 68.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적합성 19.4%, 연계성 12.6% 순서로 나타났음
 - 이 값은 필수업무 우선 지원분야 업종별 평가시 가중치로 활용됨

8) C.R값이 0의 값을 갖는다는 것은 개별 응답자가 일관성을 유지하며 쌍대비교를 수행하였음을 의미하고, C.R.값이 0.1 미만이면 쌍대비교는 합리적인 일관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함(김수은 외, 2016)

[표 3-8] 제1계층 가중치 계산 결과

	포용성	지역적합성	연계성	가중치
포용성	1.0	4.5	4.2	0.680
지역적합성	0.2	1.0	1.0	0.194
연계성	0.2	0.5	1.0	0.126
$\lambda_{\max}=3.062$ C.I.=0.031 C.R.=0.054				

2) 제2계층 구조의 요인별 중요도 산출

- 포용성 측면의 하위 요인으로는 공공성, 시급성, 통합성이 있는데, 이 3가지 요인 중 시급성(48.5%)이 가장 높은 가중치를 나타냈으며, 공공성(38.3%), 통합성(13.2%) 순으로 나타남

[표 3-9] 포용성 가중치 계산 결과

	공공성	시급성	통합성	가중치
공공성	1.0	0.7	3.1	0.383
시급성	1.3	1.0	3.5	0.485
통합성	0.3	0.3	1.0	0.132
$\lambda_{\max}=3.004$ C.I.=0.002 C.R.=0.003				

- 지역적합성 측면에서는 지역산업기반 요인, 지역미래수요 요인으로 평가하였는데, 지역산업기반 요인의 가중치가 61.7%로 지역미래수요 요인(38.3%)보다 높았음

[표 3-10] 지역적합성 가중치 계산 결과

	지역산업기반	지역미래수요	가중치
지역산업기반	1.0	1.6	0.617
지역미래수요	0.6	1.0	0.383
$\lambda_{\max}=2.00$ C.I.=0.00 C.R.=0.00			

- 연계성 측면의 하위요인으로는 노동혁신 기여, 정부정책 연계, 지자체 정책의지 로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연계성 측면에서는 정부정책 연계 요인(35.3%), 지자체 정책의지(33.9%), 노동혁신 기여(30.8%)의 순으로 나타남

[표 3-11] 정책연계성 가중치 계산 결과

	노동혁신 기여	정부정책 연계	지자체 정책의지	가중치
노동혁신 기여	1.0	1.0	0.8	0.308
정부정책 연계	1.0	1.0	1.2	0.353
지자체 정책의지	1.3	0.8	1.0	0.339
λ max=3.019 C.I.=0.01 C.R.=0.016				

3) 계층구조의 요인별 가중치 산출 총합

- 앞에서 산출된 제1계층의 중요도를 기준으로 하위 계층의 중요도를 승산한 후 최종 하위계층의 중요도를 산출하면 다음과 같음
- 전체적인 가중치 분포도를 살펴보면 포용성 측면의 중요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시급성(0.3301), 공공성(0.2604)이 각각 1위와 2위의 순으로 나타났고 통합성 요인은 0.0898로 4위를 기록함
- 지역적합성 측면의 지역산업기반 요인과 지역미래수요 요인은 각각 0.1198, 0.0742로 3위와 5위를 차지함

[표 3-12] 계층구조의 요인별 가중치 산출 총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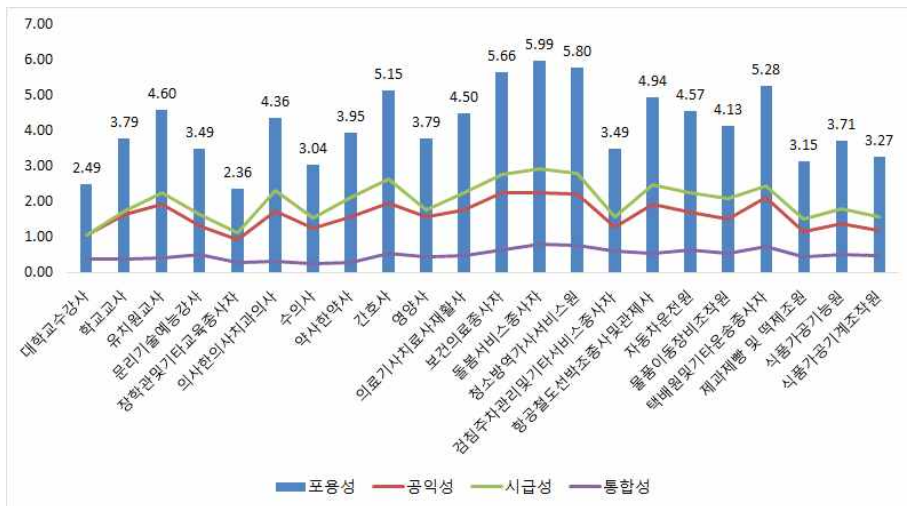
구분	가중치		순위
	평가항목별	총합	
1. 포용성	0.680		
(1) 공공성	0.383	0.2604	2
(2) 시급성	0.485	0.3301	1
(3) 통합성	0.132	0.0898	4
2. 지역적합성	0.194		
(1) 지역산업기반	0.617	0.1198	3
(2) 지역미래수요	0.383	0.0742	5
3. 연계성	0.126		
(1) 노동혁신 기여	0.308	0.0387	8
(2) 정부정책 연계	0.353	0.0444	6
(3) 지자체 정책의지	0.339	0.0426	7
C.I.=0.0664 C.R.=0.0161			

다. AHP 분석 종합결과

1) 평가기준 분석 결과

■ 포용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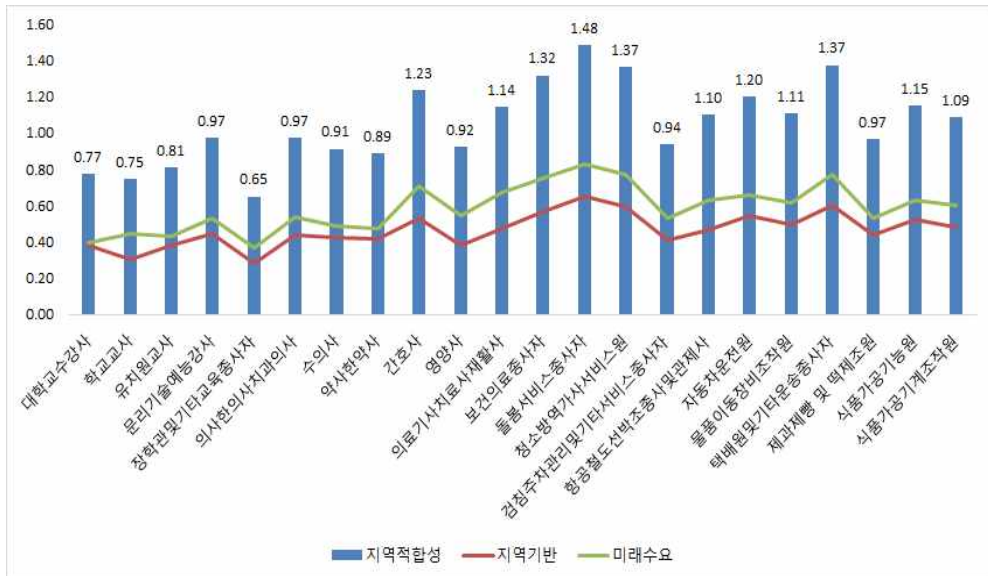
- 포용성 기준에서 평가결과를 비교해 보면 돌봄서비스종사자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청소방역가사서비스원, 보건의료종사자, 택배원 및 기타운송종사자, 간호사 순으로 나타남
- 하위 평가기준인 공공성 측면의 업무별 중요도는 돌봄서비스종사자, 보건의료종사자, 청소방역가사서비스원 순으로 나타남
- 시급성 측면에서의 업무별 중요도는 돌봄서비스종사자, 청소방역가사서비스원, 보건의료종사자 순으로 나타남
- 통합성 측면의 업무별 중요도 돌봄서비스종사자, 청소방역가사서비스원, 택배원 및 기타운송종사자 순으로 나타남



[그림 3-2] 포용성기준 중요도

■ 지역적합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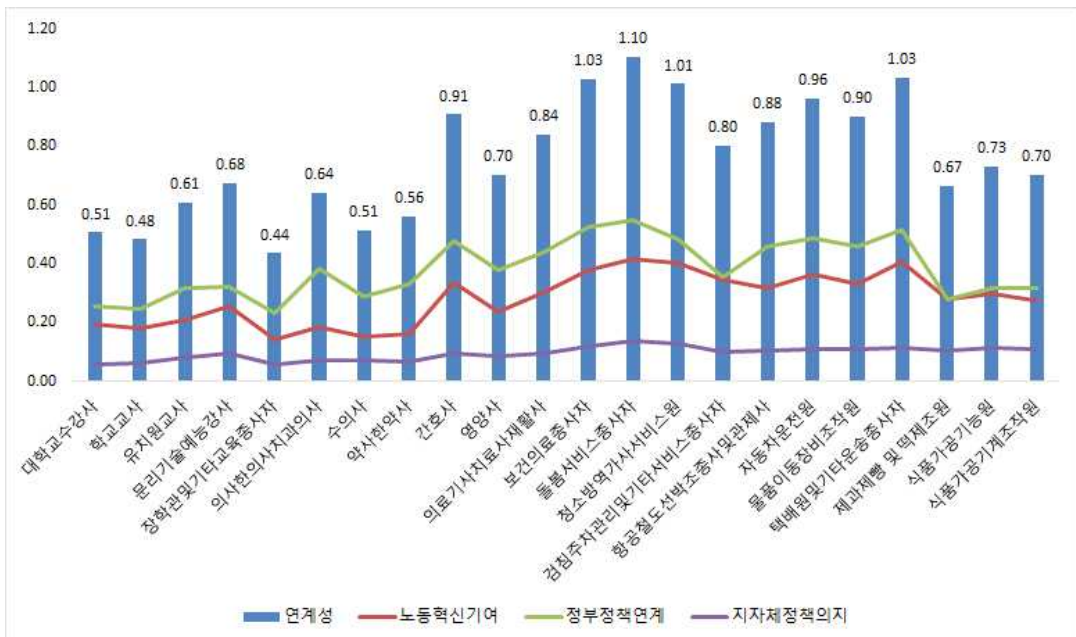
- 지역적합성 기준에서 평가결과를 보면 돌봄서비스종사자, 택배원 및 기타운송종사자, 청소방역가사서비스원, 보건의료종사자, 간호사 순으로 나타남
- 하위 평가기준인 지역기반 요인에서의 업무별 중요도는 돌봄서비스종사자, 택배원 및 기타운송서비스종사자, 청소방역가사서비스원 순임
- 미래수요 측면에서는 돌봄서비스종사자, 택배원 및 기타운송종사자, 청소방역가사서비스원 등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3-3] 지역적합성기준 중요도

■ 연계성

- 연계성 기준에서는 돌봄서비스종사자, 택배원 및 기타운송종사자, 보건의료종사자, 청소방역가사서비스원, 자동차운전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노동정책혁신 측면의 업무별 중요도는 돌봄서비스종사자, 택배원 및 기타운송종사자, 청소방역가사서비스원의 순임
- 정부정책연계 측면에서는 돌봄서비스종사자, 보건의료종사자, 택배원 및 기타운송종사자 순임
- 지자체 정책의지 측면에서는 돌봄서비스종사자, 청소방역가사서비스원, 보건의료종사자 순임



[그림 3-4] 연계성기준 중요도

2) 종합 분석 결과

- AHP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종합순위 상에서 합계평균치 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업무는 돌봄서비스, 청소방역가사서비스, 보건의료종사자, 택배 및 기타운송, 간호사, 항공철도선박조종사 및 관제사, 자동차운전원, 의료기사치료사재활사, 물품이동장비조작원, 유치원교사, 의사한의사치과 의사 등 11개 분야로 나타남
- 본 연구에서는 종합순위 보다는 평가기준의 평균값보다 높은 점수를 얻는 업무 중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업무를 우선 지원이 필요한 경우로 판단하고자 함
 - 예를 들어 3가지 지표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우선지원이 필요한 경우로 선정하고자 함
- 판단 결과, 포용성, 적합성, 연계성 등 3가지 지표에서 공히 평균치보다 높은 값을 보이는 업무는 돌봄종사자 외 7개로 나타났음
 - 다시 말해, 우선 지원이 필요한 업무는 돌봄서비스종사자, 청소방역가사서비스원, 보건의료종사자, 택배 및 기타운송종사자, 간호사, 항공철도선박 조종사 및 관제사, 자동차운전원, 의료기사치료사재활사로 판단됨
- 전라북도에서 우선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는 다음의 4가지 분야로 요약할 수 있음
 - 운송물류 분야 : 택배 및 기타운송종사자, 항공철도선박 조종사 및 관제사, 자동차운전원
 - 보건의료 분야 : 간호사, 보건의료종사자, 의료기사치료사재활사
 - 돌봄분야 : 돌봄서비스종사자
 - 생활서비스 분야 : 청소방역가사서비스원

[표 3-13] 종합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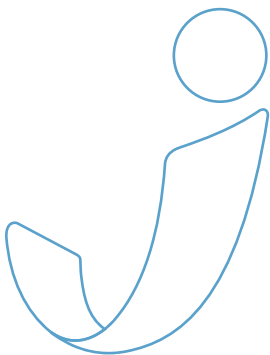
필수업무	종합 순위	합계	포용성	적합성	연계성	평균치 상회 결과			우선지원 선정결과
						포용성	적합성	연계성	
돌봄서비스종사자	1	8.5783	5.9933	1.4819	1.1031	●	●	●	선정
청소방역가사서비스원	2	8.1793	5.8002	1.3660	1.0130	●	●	●	선정
보건의료종사자	3	8.0043	5.6586	1.3175	1.0282	●	●	●	선정
택배원및기타운송종사자	4	7.6861	5.2792	1.3734	1.0335	●	●	●	선정
간호사	5	7.2920	5.1494	1.2333	0.9093	●	●	●	선정
항공철도선박조종사 및 관제사	6	6.9232	4.9413	1.0986	0.8833	●	●	●	선정
자동차운전원	7	6.7394	4.5746	1.2011	0.9638	●	●	●	선정
의료기사치료사재활사	8	6.4826	4.5001	1.1437	0.8389	●	●	●	선정
물품이동장비조작원	9	6.1390	4.1285	1.1094	0.9011		●	●	
유치원교사	10	6.0164	4.5962	0.8118	0.6085	●			
의사한의사치과 의사	11	5.9757	4.3605	0.9747	0.6405	●			
식품가공기능원	12	5.5896	3.7073	1.1506	0.7317		●		
영양사	13	5.4205	3.7939	0.9247	0.7019				
약사한약사	14	5.4021	3.9532	0.8865	0.5623				
검침주차관리및기타서비스종사자	15	5.2269	3.4880	0.9356	0.8033			●	
문리기술예능강사	16	5.1391	3.4903	0.9727	0.6761				
식품가공기계조작원	17	5.0548	3.2671	1.0852	0.7026		●		
학교교사	18	5.0166	3.7852	0.7469	0.4845				
제과제빵 및 떡제조원	19	4.7791	3.1481	0.9653	0.6657				
수의사	20	4.4697	3.0437	0.9128	0.5132				
대학교수강사	21	3.7742	2.4922	0.7741	0.5079				
장학관및기타 교육종사자	22	3.4423	2.3560	0.6493	0.4369				
평균값	-	5.9696	4.1594	1.0507	0.7595				



제4장

전라북도 필수노동자 근로여건 및 정책수요 조사

1. 조사개요
2. 조사결과
3. 시사점



제4장 전라북도 필수노동자 근로여건 및 정책수요 조사

1. 조사개요

가. 조사 내용

- 본 장에서는 전라북도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정책 마련을 위해 필수노동에 종사하는 당사자들로부터 고용여건 및 지원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면접조사를 진행함
- 앞 장에서 도출된 우선 지원이 필요한 주요 필수업무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근로여건과 고충 사항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노동 제공 과정에서 건강, 안전 보장 및 처우 개선 등 필수노동에 종사하는 당사자들의 정책수요를 도출하기 위해 개별 또는 집단 면접조사를 실시함
- 조상대상을 앞 장에서 제시하고 있는 필수업무 운송, 보건·의료, 돌봄, 생활서비스 외에 식품가공분야를 포함함
- 식품가공분야의 경우 전라북도 산업의 특성 중 대면성이 높은 분야를 반영하고자 했기 때문임
- 조사기간은 2022년 02월 10일부터 2022년 02월 24일까지 총 15일간 11명을 대상으로 진행함
- 반구조화된 질문을 바탕으로 각 분야의 당사자들이 처해있는 일터의 실태와 당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관련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
- 면접조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해당 직종 필수노동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규모, 고용 조건 및 처우 등 일반적인 사항
 - 코로나19 상황에서의 근무상황 및 변화
 - 필수노동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및 지자체와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의견 등

[표 4-1] 전라북도 필수노동자 근로여건 실태 및 정책수요 조사설계

구분	내용
조사대상	도내 필수노동에 종사하는 당사자(단, 식품가공 포함)
조사지역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조사지역을 구분하지 않음
조사방법	반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 및 의견청취
조사기간	2022년 2월 10일 ~ 2022년 2월 24일
조사 주요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내 필수노동자 근로여건 및 환경 - 코로나 19에 따른 업무환경 변화 -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정책 수요

나. 조사대상

- 인터뷰 조사대상자는 노동정책 관련 유관기관, 노동자 단체 실무자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선정하였으며,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경제활동 지역은 고려하지 않았음

[표 4-2] 인터뷰 참여자 구성 현황

구분	분야	성명	직무	고용형태
운송	자동차운전	김○○	택시기사	정규직
	자동차운전	이○○	버스기사	정규직
	배송 및 하역	권○○	택배배달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보건·의료	비간호직	정○○	상담 등	정규직
	영양사	이○○	식단, 위생관리, 행정업무	정규직
돌봄	장애인돌봄	은○○	가사·간병	정규직
	노인돌봄	박○○	노인생활지원사	계약직
	아동돌봄	유○○	보육교사	정규직
생활서비스 (환경미화)	가로청소	김○○	가로청소	민간위탁
	재활용품분리원	이○○	재활용품분리수거, 운전, 소각	민간위탁
식품가공	식품제조	김○○	반찬제조·판매	자영업

2. 조사결과

가. 필수노동자 노동환경

1) 고용관계의 비합리성 및 고용 불안정성

- 필수노동자는 임금 근로자 형태로 고용된 노동자와 다른 형태의 고용관계도 있고 동일한 노동을 제공하지만 실제 사용자와의 고용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관계도 있음
- 택배업의 경우 원청과 대리점 간 위탁계약이 이루어진 후, 대리점과 택배기사 간에 재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구조임
 - 배송업무는 원청의 프로그램 어플을 사용하고 있고 원청사가 배달기사의 물량, 노동방식(배송시간 등)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것으로 보임
 - 택배기사는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이지만 근로기준법 상의 노동자가 아니고 고용이나 산업재해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라 할 수 있음
- 청소노동자의 경우 고용형태가 2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직접고용과 위탁고용이 있음

(택배노동자) CJ대한통운이 있고 또 가운데 대리점이 있어요. 대리점이 있고 그다음에 그 대리점하고 계약을 맺는 게 택배 노동자죠. 그래서 직접 고용 관계는 아니에요. 저희는 대리점과의 계약이죠. 그런데 신분상 자영업자이기도 해요. 아이러니하죠.

(환경미화_거리청소) OO시 환경미화원은 시 직속이 있고 위탁업체 소속이 있는데, 저는 위탁업체 소속입니다.

- 돌봄 노동자의 경우에는 이용자의 편의에 따른 계약직 노동자로 고용되어 있는 경우도 있음
 -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단기간의 계약직 고용 형태거나, 다수의 센터에서 단시간 노동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음

(가사간병노동자) 주로 단기간의 계약직 형태로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어요.

(요양보호사) 한 달에 근무 가능한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군데 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고 있어요. 아침 7시에 어르신 노치원 가시는 것 봐드리고 집 정리 다 하면 10시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장소로 이동해서 장애인 운동시키는 일을 하고 있어요.

2)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적 처우

- 위탁업체 소속 근로자의 경우는 실제 사용자와 직고용한 노동자와 임금이나 처우수준 등에서 차별을 경험하고 있음

(환경미화원_거리청소) 휴가는 저희는 1년에 두 번 쉬죠. 4일을 쉬는데 추석 때 하고 다음 날, 구정 때 하고 구정 다음 날 4일을 딱 쉬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연차를 써야 해요. 일반 공휴일 같은 경우는 출근은 무조건 다하고요. 빨간 날인데 공식적으로 평일날이면 출근을 합니다. 시 직속 청소노동자는 이렇게 안 할 거예요.

(환경미화원_운전 및 재활용품분류) 저희는 직영과의 차별이 좀 심해요. 그래서 과거에는 좀 편한 구역도 있었는데 지금은 구도심이나 도로 좁은 데는 다 저희가 하고 시 직영들은 좀 편한 데를 많이 하고 있죠. 저희가 이 점을 인권위에서 2019년도에 제소했는데 바뀌는 게 없더라고요. 급여도 시의 경우 호봉으로 가고, 임금도 세고 모든 수당들이 붙어서 임금 차가 한 10% 이상 차이가 납니다.

연차가 있고 연차로 해서 휴가를 받는 거죠. 그런데 저희는 연차로 그냥 휴가를 쓰고 있고요 시는 6일씩 준다는 거 알고 있어요. 연차 말고 별도로 준다고. 그래서 저는 그것도 우리도 한 3일은 줘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회사와 노사 협의 때 자꾸 얘기를 했죠. 근데 회사에서는 업무 공백이 돼서 안된다고 합니다.

시는 위험수당, 가족수당 여러 가지가 있어서 급여 체계도 높지만 저희는 그런 수당이 전혀 없어서 위험 수당을 9만 원을 주라 내가 그랬어요.

3) 작업환경 시설 및 여건 열악

- 필수노동자들은 열악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어 있는데 작업공간이 협소한 경우도 있고 비가림막, 바닥시설, 화장실 등 기본적 작업 시설이 미흡한 상황
- 택배노동자의 경우 컨베이어벨트에서 물품을 분류하거나(최근에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우미가 분류해줌) 물건을 차량에 실어야 하는데 공간자체가 협소하고 기본적 냉난방이 어려운 상황
- 환경미화원의 경우 노후화된 차량으로 인해 노동자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음

(택배노동자) 여기가 여름에 엄청나게 뜨거워요. 여기서 땀을 다 빼놓고 나가서 또 밖에서 땀을 빼는 그런 거고, 또 겨울에 여기가 정말 발이 얼 정도로 차갑거든요. 근데 난방 용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개인적으로 난로나 이런 걸 구입해서 그냥 난로 하나에 의지해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배송하는 것보다 여기에 있는 게 더 괴롭죠. 또 여기가 완전히 꽉 막혀 있어서 먼지가 엄청나요.

(환경미화원_운전 및 재활용품분류) 차 매연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어요. 우리 디젤차에서 요소수가 타면서 매연이 심해요. 인체에 해가 더 많다고 봐야죠.

(시내버스운전자) 식당도 가보면 위생이 불량한 경우가 많아요. 또 화장실 같은 경우도 푸세식 갖다 놓고서 그거 사용하라고 그러니까 불편해요. 저렇게 큰 종점에도 기본적으로 항상 서 있는 차 대수가 한 20대 이상 되거든요. 순환이 될 경우에 한 80대 가까운 차가 저기를 온다는 건데 그런 실정이에요.

휴게공간은 컨테이너 박스 하나는 있어요. 냉난방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고 아예 화장실조차 없는 곳도 있기 때문에 불편해요.

- 또한 과도한 업무로 인해 적절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거나 끼니를 챙기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함

(택배노동자) 일단 아침에 출근을 해서 프레이어 벨트 앞에서 본인 물건이 오면 물건을 정리를 해서 나가는데 그 시간이 한 11시, 12시 정도에 끝나요. 끝나면 그때부터 나가서 실질적인 배송 업무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점심을 거의 다들 걸러요. 사실 여태까지 제가 택배를 한 16년 정도 했는데 사실상 점심 먹는 건 굉장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진짜 개인적으로는 정말 언제까지 택배기사는 점심을 굶어야 하는가라는 문제의식을 좀 갖고 있거든요. 그거 회사에다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점심을 굶다 보면 저녁 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 또 집에 가면 폭식을 하게 되고 그리고 딱히 뭐 쉴 시간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힘드니까 바로 잡니다. 그래서 식도염에 걸리신 분도 많고요.

(시내버스운전자) 식사시간을 따로 주지는 않아요. 그런데 또 어떤 분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나 보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일을 하면 다음 배차 출발하기 전까지 잠깐의 시간 있잖아요. 이 시간을 휴게 시간으로 인정을 안 해준다 이런 게 있어요.

4) 건강과 안전에 대한 지원 부족

-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 사업주가 고용인의 건강관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로부터 안전과 건강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택배노동자) 기본급은 없고, 일을 하나도 못하면 수입이 없어요. 아파서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저희하고 직접 고용 대상인 대리점에서 그 물량을 해결해 주고 대리점에서도 요청을 하면 회사에서도 투입이 돼서 이 물량을 처리해 줍니다. 하지만 제가 쉬는 것만큼 돈은 못 받겠죠.

(택시노동자) 무노동 무임금입니다.

(비간호노동자) 아파서 쉬는 경우 해당 날짜의 소득을 다른 직원들에게 나눠줘요. 다른 직원들이 제 일을 대신 해주기 때문이에요.

(보육교사) 병가의 개념이 없어요. 아파도 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아파서 못 나와서 대체교사를 투입하는 경우 본인의 월급을 대신 지급합니다.

(시내버스운전자) 작년에 바뀐 보건법 중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간호조무사처럼 이렇게 계시는 분이 있어야 되는 걸로 제가 알거든요. 누가 오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오셨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런 거에 대해 어떻게 활용할지 얘기가 없어요.

5) 노동자에 대한 존중과 배려 부족

- 이용자의 인식 부족으로 돌봄 노동자에게 부적절한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함
- 이용자가 서비스제공자에게 폭력, 폭언 또는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음

(가사간병노동자) 이용자가 마스크를 쓰려 하지 않는 게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코로나라고 외출이 금지 당했을 때 집 안에서 흡연을 하는 분들이 계시요.

(택배노동자) 일단 외부에 나가면 사실 배송을 하거나 그럴 때 좀 갑질이 있죠. 고객 갑질 그리고 이 전화적인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아요. 고객도 언제 오냐고, 나 집에 없는데 여기 다 나라, 아니면 뭐 나 저쪽 다른 데로 받고 싶은데 그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라던가 또 본사를 통한 고객센터에서도 전화가 오거든요. 고객센터 전화 업무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 보시다시피 이어폰 끼고 다니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몸을 움직이는 일을 계속해야 되는데 전화만 받을 수 없고 그러니까 전화를 받으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죠. 전화 업무 특히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문자도 엄청나게 오고 또 심지어는 뭐 카톡으로도 보내신 분들도 계시고 예를 들어서 물건 언다 냐냐 물건이 없다. 라고 하면 찾아봐야 되고 실제 분실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요즘에 최근에 문 앞에 놓는 것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가져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 부분은 고스란히 찾지 못하면 저희 책임을 져요. 그 물건이 10만 원이 됐든 100만 원이 됐든 제 수입에서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실 막말하시는 분도 많고요, 또 전화해서 스트레스를 푸시는 분들도 많고 심지어는 폭행도 당하는 상황도 있어요.

상답받을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진다면 전 한번 받아볼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내 심리는 어떤지 사실 어디 병원 가기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와서 직접 해준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가사간병노동자) 알코홀릭이라든가 어떤 폭력을 행한다거나 좀 과도한 업무를 요구를 한다거나 예를 들면 강아지 배설물을 다 치우라던가 하는 분들이 있어요. 강아지 산책 같은 거는 할 수 있죠, 이용자를 돕는 거니까. 그런데 막 강아지가 다 대변을 해놓은 것들을 치우라는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요.

가장 많이 듣는 건 언어 폭력이에요. 예를 들면 “아줌마”, “이봐” 라고 하대하죠. 그분들은 막 연히 제공 인력이 아주 어려워서 내가 이런 서비스를 이용해줌으로써 너는 먹고 산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요양보호사) 예를 들어서 시금치도 다듬어서 씻어서 해나라, 반찬거리들 그런 거 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또 가족들 집안일까지 다 하는 거, 김치 담아줘라, 그러는 거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 방문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집에서 성희롱 등을 경험하는 사례도 있음. 이러한 경우 제공기관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취하고 있음

(가사간병노동자) 이용자분들의 성생활에 저희가 노출될 때도 있어요. 저희가 서비스가 분명히 들어오는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으로 발견이 되면 문을 닫고 나온들 피해를 이미 본 거잖아요.

- 임금수준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부분도 있었음

(시내버스운전자) 만약에 일요일날 근무를 했어, 그러면 상식적으로 1.5배를 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왜 그런 기준이 어디서 나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임금 협정서나 이런 데 봐도 없어요. 저희 회사는 출퇴근을 도장을 찍는다든지 사인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이어서 노동시간에 대해 정확한 대가를 줬는지를 모르는 거죠.

6) 기타

(가사간병노동자) 이용자를 돌보느라고 자기 가정을 못 돌보는 거예요.

나. 코로나19 이후 업무환경 변화 및 고충사항

1) 업무량 증가

- 코로나 이후 자체업무가 증가하거나 본업무가 아닌 추가업무와 그로 인한 비용발생 등의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코로나 감염위험 때문에 방역업무가 추가되면서 업무량과 업무강도가 매우 증가했다는 의견이 많았음

(택시노동자) 카카오택시에 가입한 기사들은 콜이 엄청 늘었다고 하대요.

(택배노동자) 코로나 이전을 80으로 보면 이후는 100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물량도 거의 한 100개 정도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한 달로 치면은 2천 개에서 3천 개 정도 됩니다.

(요양보호사) 저희는 마스크를 끼고 업무를 하고, 대면 센터 같은 경우는 보니까 선생님들 다 꼭 PCR 검사하고 들어오시더라고요, 아침마다.

(시내버스운전자) 초반에는 손님이 마스크를 안 쓰고 탄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었고, 차 내에서 일부러 마스크를 벗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운행을 하다가 이걸 보게 되면 그냥 지나칠 수 없으니까 마스크 착용을 해달라고 얘기하는데 실랑이가 여러 번 벌어지기도 하고요. 그러면 경찰분들이나 불러가지고 오시면 그 때는 마스크를 쓰고요. 그러면은 마스크 단속을 왜 해야 될 까라는 생각이 들죠. 저희가 어차피 권한도 없고 괜히 감정만 서로 상하고 그냥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보육교사) 코로나 이후, 아이들이 낮잠시간에 마스크를 쓰고 자요. 그래서 마스크 잘 착용했는지 자주 확인해주어야 하고, 특히 외부 활동시 마스크가 젖을 경우 케어하고 있어요. 마스크를 착용하고 생활하기 때문에 신입선생님들의 경우 아이들의 얼굴을 구분하기 어렵다고 해요.

(영양사) 코로나 이후 업무는 위생업무가 굉장히 늘어났어요. 청결관리 범위가 기존에 비해 확대되었고, 식당 주변 및 정수기 소독을 매일 했어요. 방역은 정부 방역지침에 맞추어 이루어지고 있지만, 기존에 업무에 더해 방역까지 신경써야 하니까 업무량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 방역업무 비중이 높아져 본래 업무에 지장이 생기거나 업무상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었음

(영양사) 실제로 코로나 이후 방역업무가 추가되면서 원래 업무인 영양관리 및 식단관리 업무는 11시 이후에 시작하게 되요. 그러면 6시까지 원래 본업을 다 끝내야 하기 때문에 점심시간에도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와요. 점심시간 보장이 안되고 있죠.

코로나 시기에 업무량이 많아진 것도 있지만, 업무상 제약도 많은 상황이에요. 특히 식단 메뉴 구성 및 제공에 있어서 제약이 있어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생야채를 드시고 설사를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설사를 하시면서 열도 나는데 코로나 증상과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식단메뉴에 상추쌈이 나오는 경우에 코로나 이전에는 공동으로 드실 수 있게 1테이블 당 1바구니로 제공했었는데, 지금은 칸막이가 설치되면서 1인 식단으로 지원하고 있어 식사 준비 시간도 늘어나고 일도 늘어났어요.

요양원에서 조리원이 자가격리에 들어가거나 요양원 전체가 코호트 격리가 된다는 가정을 해봤는데, 조리원이 자가격리를 하게 되면 영양사가 직접 조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코호트 격리 시 어르신이 발열, 기침 뿐만 아니라 미각을 상실하게 되면 어르신들은 식사를 못하시고 그 경우 컨디션이 급격히 안 좋아지시기 때문에 큰 병원으로 이송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양원에서 코로나 발생시 사망자가 많은 것이예요. 이 경우 영양사는 식단을 다시 구성해야 하는데 질환식과 일반식 등 어르신들 별로 개별 관리가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2) 이용자 감소로 소득액 변화

- 코로나 이후 거리두기에 따라 이용자가 감소한 분야도 발생했는데, 가사간병 노동자나 식품가공판매 분야의 경우에는 소득에 타격을 받음

(가사간병 노동자) 근데 가사 간병이나 이런 요양보호사분들은 시간제로 근무하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일을 못하게 되면 타격을 많이 받아요. 코로나 초창기에는 무서워서 이용자분들이 들어오지 말아라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고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환경이었죠.

(식품가공판매 노동자) 코로나 이후 명절 같은 때는 소득이 1/3 수준으로 줄어들었어요. 반찬 만들어 파는 것 외에 학교 도시락이나 산악회 도시락 배달을 했었는데, 코로나 이후 모두 중단되었어요.

3) 방역준수에 따른 비용 부담

- 방역과 관련해서 추가업무 및 방역물품 구매비용이 발생하였지만 업무에 대한 보상이나 물품 구매비용 보전이 이루어지지 않음

(택시노동자) 방역 관련해서는 소독제 가지고 다니면서 막 마스크도 다 자기 돈 주고 삽니다. 하루에 몇 번씩 갈아 끼야 되는데 이거 하면 자꾸 습기가 차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기사들이 다 그 것도 개별 부담이예요.

(택배노동자) 개인이 방역을 신경써야 해서 마스크나 손소독제를 직접 구매하고 있어요.

(시내버스운전자) 일단 저희도 다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름철엔 음료도 섭취해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걸 하기가 힘들죠. 보통 긴 노선 같은 경우는 한 바퀴 돌면 한 2시간 넘게 걸리고 이러는데 그런 경우에도 목 타도 참고 가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죠. 마스크를 안 쓰면 그전에 조금 괜찮았는데 마스크 착용하면서 아무튼 간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마스크는 회사에서 얼마전 160 몇 개를 한꺼번에 줬는데 그 전에 안 줬어요. 다른 회사는 KF94를 하루에 한 개씩 줬는데 저희는 그 일회용 같은 걸 어디서 사갖고 와가지고 한 일주일에 다섯 장 이렇게 한 번 주고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동안 안 준 거 해가지고 한 10 몇 개씩을 한 번 지급해 준 적은 있거든요. 그 이후로 받아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필요한 것은 저희가 직접 다 구매를 하고 있어요.

(영양사) 정부에서 방역인력 지원사업을 해주는데, 정부·지자체에서 방역인력을 직접 선발해서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요양원에서 직접 방역인력을 모집해야 하는 방식이에요. 채용공고를 냈지만 구해지지 않더라고요. 요양원 위치가 시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내와 멀리 떨어진 곳에 있다 보니 4시간 근무하려고 변두리까지 오는 사람이 없죠. 결국 사람을 구하지 못하고 기존 인력들이 해당 업무, 구역별로 나누어서 방역까지 담당하게 되었어요.

- 코로나 감염이나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노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 소득감소로 이어지는 등 불이익이 발생함

(보육교사) 코로나 확진자와 동선이 겹친 선생님의 경우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대체인력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 비용을 해당 교사가 지불했어요.

(비간호노동자) 지난번 코로나 확진자가 병원에 방문했을 때, 환자를 치료한 치위생사의 경우 밀접접촉자로 자가격리를 했는데, 그만큼 소득이 줄었어요. 본인 잘못도 아닌데, 이런 경우는 좀 억울하죠.

(환경미화원_운전 및 재활용품분류) 저희가 확진자 동선이 겹쳐서 이틀 정도 일을 못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 연차에서 까버려요.

- 이 외에도 코로나 감염위험 때문에 주말에 외부활동을 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도 발생

(보육교사) 연차시에 대체교사 수급이 어려워져 실제로는 휴가가 밀리는 상황이에요. 하반기(9월 정도)에 신청하는 경우 밀려서 아예 못가는 경우가 많아요. 교사들의 경우도 주말에 휴식하고 외부활동도 하고 싶은데, 혹시라도 코로나 확진되어 아이들에게도 전염될까봐 주말에 재충전 할 기회가 없어요.

4) 감염에 대한 스트레스

- 대면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의 경우 코로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위기감이 높음

(가사간병노동자) 이용자가 너무 방역 수칙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하다 보니 그 안에서 마스크 쓰지 않고 또 이용자가 막 지인들과의 모임을 서비스 시간에 하거나 이럴 때는 겁나고... 또 배설물을 치워야 하는 경우에 앞치마를 해도 배설물 감염 위험이 있으니까 좀 그런 거에 위기감을 느끼는 거죠.

(택시노동자) 항상 코로나 위험에 노출돼 있죠. 어떤 사람이 탈지 모르잖아요. 택시라는 것을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하시니까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더 노출돼 있죠.

(환경미화원_운전 및 재활용품분류) 요양병원 쓰레기를 수거할 때 안 좋은 질병 같은거에 감염될 수도 있거든요. 감염 위험이 많아서 항상 조심하라고 제가 말해도 그거 조심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우리시가 분리수거가 전혀 안 돼요. 병을 소각봉투에 넣어서 많이 다치기도 합니다. 또 쓰레기봉투에 음식물이 같이 들어있어서 봉투가 터져서 막 뒤집어 쓰기도 하고, 냄새가 엄청 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감염의 위험이 있기도 합니다.

5) 백신휴가 소외

-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차원에서 백신접종이 진행되었고 이에 따라 백신휴가 유급지원에 대한 정부의 권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필수노동자들은 백신휴가가 보장되지 않았음

(환경미화원_거리청소) 백신 휴가는 없고 3시에 일 끝나고 4시에 가서 맞는거죠, 일 끝나고 그 날 저녁에 쉬는 거죠. 그리고 다음 날 새벽에 출근해야죠.

(택배노동자) 가급적이면 토요일에 맞고 토요일날 일을 하고 일요일날 쉬는 그런 형태로 많이 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사람을 굉장히 많이 만나기 때문에 무조건 맞아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좀 안타깝죠.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쉬지 못하고 해야된다라는 게 굉장히 안타깝죠.

(시내버스운전자) 2차까지는 그나마 하루 휴무를 췌어요. 3차부터는 안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자기 휴무 때 맞거나 아니면 그냥 일 끝나고 맞거나 이리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일 끝나고 맞았어요.

(택시노동자) 우리 노동조합 가입자는 쉬었지만 다른 동네는 못 쉬어요. 무노동 무임금 이기 때문입니다.

(식품가공판매 노동자) 자영업이기 때문에 연차, 병가 이런 개념이 없어요. 소득과 바로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전에 일하고 오후엔 백신을 맞고 그 다음 날 바로 일했어요. 다행히 부작용이 심하지 않았고 3차 때는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나와서 일을 했어요.

다. 정책수요

1) 처우개선

- 필수노동자들은 처우 개선에 대한 다양한 요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환경미화 노동자는 고용형태별로 심한 임금 차별을 겪고 있으며, 수당에 있어서도 차별을 겪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직접고용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환경미화원_거리청소) 00시 환경미화원은 시 직속이 있고 위탁업체 소속이 있는데, 저는 위탁업체 소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수준이라든가 근로여건 등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나요. 하는 일이 같으니 직접고용이 맞죠. 그런데 비용감소를 이유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시는 위험수당, 가족수당 여러 가지가 있어서 급여 체계도 높지만 저희는 그런 수당이 전혀 없어서...

(택배노동자) 고용 개선은 진짜 사람답게 밥을 좀 먹을 수 있는 그게 저는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물론 저희가 선택해서 하는 일이지만 그래도 여름 겨울 좀 따뜻하게 시원하게 여기서 작업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휴게실이 다예요. 여기 150명이 쓰고 있는데 택배 분류 도우미까지 다 여기로 오셔야 돼요. 그러면 이 장소는 너무 작고, 또 옆에 화장실이 있지만 화장실 칸이 두 칸밖에 없어요. 100명이 넘는 인원이 이걸 써야 돼요. 그러면 아침에 보시면 줄 서 있어요. 화장실 가려고. 이러한 점은 고쳐져야 할 것 같아요.

2) 부불 수당 지급

- 필수노동자들은 노동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위험이나 이동 및 고유업무 외 추가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온전히 본인이 감수하거나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예를 들어 교통비, 통신비 등 개인적 사유가 아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 위험이 발생하거나 방역준수 차원에서 추가 업무 등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가사간병노동자) 기본급이 조금 도입 되면 어떻겠나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교통비 관련된 것도 어폐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 한 번 갔으면 끝나요. 그러니까 아주 먼 거리에 a라는 지역의 이용자에게 받아버리면 그날은 다른 어떤 지역을 가도 교통비 지급이 안 돼요. 하루에 한 이용자만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OO면이라는 지역이 거의 왕복 25km 정도 돼요. 그런데 OO면에 이용자가 두 명이잖아요. 그러면 한 명만 받는 거예요.

(보육교사) 보육교사들의 휴가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체교사를 충분히 수급해주었으면 하고 백신티아가 보장되었으면 합니다.

(영양사) 방역인력지원 사업은 개선이 필요해요. 방역인력을 국가나 지자체 차원에서 채용해서 보내줘야 해요. 기존 인력이 추가 업무를 하는 경우 보상을 해주어야 하고요.

3) 안전·건강권 보호

- 노동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부담에 대한 보상과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과 공간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들은 차량 운행에 따른 사고 위험에 대한 부담과 사고발생에 대한 책임도 큰 것으로 파악되며, 백신 접종을 거의 의무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신티가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업무의 과다로 인한 인력지원을 필요로 함

(택배노동자) 고용 개선은 진짜 사람답게 밥을 좀 먹을 수 있는 그게 저는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물론 저희가 선택해서 하는 일이지만 그래도 여름 겨울 좀 따뜻하게 시원하게 여기서 작업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휴게실이 다예요. 여기 150명이 쓰고 있는데 택배 분류 도우미까지 다 여기로 오셔야 돼요. 그러면 이 장소는 너무 작고, 또 옆에 화장실이 있지만 화장실 칸이 두 칸밖에 없어요. 100명이 넘는 인원이 이걸 써야 돼요. 그러면 아침에 보시면 줄 서 있어요. 화장실 가려고. 이러한 점은 고쳐져야 할 것 같아요.

(보육교사) 보육교사들의 휴가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체교사를 충분히 공급해주었으면 하고 백신�휴가가 보장되었으면 합니다.

(택시노동자) 복지 쪽에서 산재나 이런 모든 것들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끔 아니면 좀 법령을 있는 대로라도 지자체에서 강력하게 집행하는 것 이것만 해주시면 네 저희도 바랄 거 없습니다.

(환경미화원_운전 및 재활용품분류) 위험 수당을 9만 원을 주라 내가 그랬어요.

4) 방역강화 및 지원사업 개선

-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방역지침을 만들고 있긴 하지만 각 사업장마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방역지침이 필요하지만 자체 방역지침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었음

(환경미화원_운전 및 재활용품분류) 코로나가 지금 10만이 넘었으니까 한 번쯤은 걸릴 수도 있는 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회사에서 세워줘야 하는데 무방비 상태입니다. 열 체크 기계도 조그마한 거 하나 갖다 놓고, 계다가 고장 나면 방치 해놓고 그런 게 있어요. 또, 맨날 방역 수칙 잘 지키라고 말로만 하고 마스크도 어쨌든 많이 주고 그래야하는데 한 달에 10개 정도 줍니다. 우리가 10개 가지고는 안 되죠. 또 밤에 나갈 때도 바퀴 쓰고 나가야잖아요, 냄새 나니까. 우리는 30개 줘도 부족하다고 봐야죠. 26일 일하니까 26개 줘도 되는데 10개만 줍니다.

(시내버스운전자) 재난 재해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거에 대한 교육 지침이라든지 아니면은 물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승객을 대하는 방식이나 차내의 청결 유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전혀 준비돼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차량 소독 하는건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고지에서라도 하루에 한두 번이라도 오전에서 점심시간대라든지 해서 해주면 이용하시는 분들도 안심할 수 있고요.

(영양사) 앞으로 감염병이 발생하는 경우 요양원 방역지침 뿐만 아니라 업무매뉴얼이 있으면 좋겠어요. 영양사협회에서 1년에 1번씩 보수교육이 있는데, 이때 감염병관리 대응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식품위생사의 경우 면허가 있고, 영양사가 대부분 추가로 취득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규모가 큰 병원의 경우 방역관련 업무는 식품위생사가 직접하는 것이 전문적이죠. 그래서 위생사 TO가 별도로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방역관리 인력을 지원해주지 않아도 위생사가 다 커버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영양사들은 업무 과부하에 놓이게 되는거죠.

(식품가공판매 노동자) 코로나 손실보상금이라는 게 있어서 신청했는데, 업태가 음식점인 경우만 가능하고 여기는 업태가 소매업이라 손실보상금을 받지 못했어요. 코로나라고 해서 여기도 영업시간을 줄였고 그 때문에 손님도 줄었는데, 업태가 다르다고 해서 손실보상금을 받지 못한 것은 좀 억울하다고 생각해요. 정부차원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지자체에서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좀 청취하고 손실보상금의 지원분야 범위를 넓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3. 시사점

- 앞 장에서 도출된 우선 지원이 필요한 주요 필수업무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근로여건과 고충 사항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노동 제공 과정에서 건강, 안전 보장 및 처우 개선 등 필수노동에 종사하는 당사자들의 정책수요를 도출하기 위해 면접 조사를 진행하였음
- 조사결과 필수노동자들은 국민의 생명의 보호와 사회기능 유지 등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의 불안정성, 열악한 근로여건 및 처우, 대면업무의 불가피성으로 인한 감염위험 노출되어 있어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됨
- 뿐만 아니라 필수노동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기 때문에 노동을 제공받는 이들에게 부적절한 대우와 태도 등에 따른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남
- 필수노동자들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보호·지원대책의 취지와 방향은 바람직하나 실효성 있는 구체적 대책이 부족한 면이 있고,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따른 재난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분야별 필수노동자에 대한 정교하고 세심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특히 필수노동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위해서는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 등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음
- 인력충원은 해당 노동자의 건강 뿐만 아니라, 필수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를 늘려 충격을 완충하는 효과가 있음
- 필수노동자 면접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표 4-3] 필수노동자 면접조사 결과 요약

성명	분야	근로여건	주요고충	정책수요
정OO	보건 의료 (비 간호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무년수 8년 ○ 정규직 ○ 근무시간 평일 9:30~18:30 ○ 연차 있음 ○ 병가시, 당일 월급을 다른 직원에게 나누어줌 ○ 건강검진, 휴무일에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감염에 무방비노출 ○ 자가격리시 임금감소 ○ 휴게공간부족 	
이OO	보건 의료 (영양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무년수 12년 ○ 정규직 ○ 근무시간 평일 9:00~18:00 ○ 주요업무 : 영양관리, 행정업무 일부 ○ 연차, 수당 등 ○ 병가는 무급임 ○ 직장내 휴게공간 별도로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역업무 추가로 업무량 많아짐 (위생업무) ○ 방역인력 채용이 어려워 직원들이 대신하게 됨 (방역수당 없음) ○ 본래 업무시간 지장생김 ○ 업무내용 등 제약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역인력 지원사업 개선 필요 (정부·지자체 직접 채용 후 파견) ○ 방역업무 추가로 인한 수당 필요 ○ 감염병 대응 장기 대책 및 매뉴얼 필요 ○ 큰 규모의 요양원의 경우 식품위생사 별도 채용 요건 제도화 필요
유OO	돌봄 (보육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무년수 6년 ○ 근무시간 평일 9:00~18:30, 실제로 08:30~ ○ 시간외, 명절 스승의날, 선임 주임수당이 있음 ○ 연차 있음, 그러나 못가는 경우가 많음 ○ 방학기간 긴급돌봄보육시 교사들이 교대로섬 ○ 병가시, 당일임금을 대체교사에게 나누어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역지침 잦은변경 ○ 자가진단키트 불확실 ○ 코로나이후 아이들 마스크 착용 확인 등 업무 증가 ○ 주말활동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체교사 수급 원활화 ○ 백신휴가 보장 ○ 백신 선제검사 형평성 ○ 기저질환자 백신미접종 관련 대책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신병가 3차부터 없음 ○ 보육교사 힐링연수 있음(주말 외출자제 보상) 		
김OO	운송업 (택시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택시 ○ 근무시간 일 3시간 ○ 공휴일 있음(해당 노동조합만) ○ 백신휴가 있음 ○ 기본급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시간이 너무 짧음 ○ 공단건강검진지침 불이행 ○ 플랫폼 강제배차 ○ 방역물품 사비구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여건(사납금제도근절, 퇴직금지급, 산재인정 등) 관련 지자체 관리감독 강화 ○ 근로시간연장 ○ 방역물품 충분한 지급 ○ 자녀장학금 지급 등
신OO	환경미화 (가로청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무년수 2년 ○ 근무시간 평일 06:00-15:00 ○ 공휴일 없음, 백신휴가 없음 ○ 연차 있음 ○ 건강검진 지정병원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직영과의 차별 ○ 분리수거 안됨, 불법폐기물 증가 ○ 휴게공간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직접고용 ○ 시직영과의 차별철폐 (임금, 근로조건, 연차 등) ○ 분리수거 홍보, 교육 및 불법폐기 근절 ○ 지자체의 관리감독강화 ○ 휴게공간확충
권OO	운송업 (택배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년수 16년 ○ 개인사업자 ○ 근로시간 주 60시간 (그러나 못 지킴) ○ 기본급 없음 ○ 공휴일 제외 휴가 없음 (백신휴가, 연차, 선거일, 청가, 가족돌봄휴가 등) ○ 건강검진버스 제공 ○ 장기간 병가시 대리점이나 회사에서 대체 인력 투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심을 못 먹음 ○ 대리점 수수료 공제율이 높음 ○ 마스크 상시 착용 후 육체노동 ○ 코로나 이후 택배물량증가 ○ 자가격리, 확진시 수입 없음 ○ 고객갑질 ○ 물건분실시 책임 ○ 냉난방시설 부족, 먼지 등 유해물질 ○ 터미널 외곽 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심시간 보장 ○ 대리점 수수료절감 및 물량감소, 개당 단가 증대 ○ 방역물품 충분한 지급 ○ 자가격리, 확진시 보상 필요 ○ 정신상담버스 등 지원 ○ 휴게공간, 화장실, 냉난방시설 확충 필요 ○ 동호회 필요 ○ 택배터미널 혐오시설 제외 및 인식개선 필요 ○ 가족돌봄휴가 등 필요

이00	환경 미화 (재활 용품 수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년수 13년 ○ 근무시간 평일 06:00-15:00 ○ 병가 있음, 유급가능, 단기간일 경우 사내 예비인력이, 장기간일 경우 대체인력사용, 기본급 지급 ○ 공단검진실시 ○ 자가격리, 확진시 연차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직영과 업무구역 차별 ○ 코로나로 감염폐기물 증가 ○ 차 매연 ○ 가로노동자 휴게공간 부족 ○ 분리수거, 무단투기, 건축폐기물불법투기 증가 ○ 방역물품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재해, 방역대응매뉴얼 필요 ○ 시의 직접고용 또는 차별철폐 (임금, 근로 조건, 연차, 업무구역, 산재처리 등) ○ 위험수당 필요 ○ 가로노동자 휴게공간 확충 ○ 대국민분리수거홍보, 교육필요, 무단투기 및 각종 폐기물 불법투기 근절, 파파라치 제도 활용 ○ 방역물품 충분한 지급 ○ 차량소독
은00	돌봄 (가사 간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무시간 월 120-140시간 ○ 개인스케줄 맞춤형 ○ 연차, 병가 등 없음 ○ 자가격리, 확진시 임금 없음 ○ 공단검진실시, 심화검진시 금액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낮은 임금 ○ 본인자가격리, 확진시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자가격리, 확진시 근로를 할 수가 없음 (무임금) ○ 교통비 한번만 지급 가능, 장거리 교통비 일원화 ○ 이용자의 언어폭력, 갑질 광범위한 서비스 요구 ○ 감염위험물 등 ○ 병원 동행시 근무시간 불인정 ○ 생활지도사로 인해 요양보호사 수급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재해, 방역대응매뉴얼 필요 ○ 이용자의 자가격리, 확진시 대책마련 필요 (기본급 지급 등) ○ 시간외, 연휴 및 주말수당 확충 및 식비 또는 식료품 지급 ○ 교통비 세부구분 필요 ○ 이용자 교육 필요, 공무원 인식전환 필요 ○ 병원동행 등 특이사항 발생시 근무시간 인정 ○ 요양보호사 수급안정대책 ○ 정신상담서비스 지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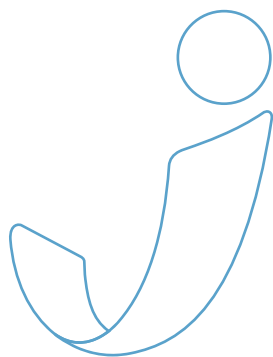
박00	돌봄 (요양 보호 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무시간 월 60시간 미만, 평일 1~2시간, 토요일 3시간 ○ 병가, 연차, 휴일 없음 ○ 건강검진 자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 신체 이상 ○ 이용자 가족과의 마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양원 근로자 PCR검사 자동화, 인력수급 ○ (가족과 의사소통) 업무범위 명시화
이00	운송 (시내 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년수 10년 ○ 근무시간 (오전인 경우) 6:00~14:30, 점심시간 없음, 차고지에서 시작점까지 가는 시간 (30~40분) 제외 ○ 통합임금체계, 기본급 없음 ○ 교대근무 ○ 공단건강검진 시행시 공가 없음 ○ 연차 있음, 사용자 대체인력 고용 ○ 병가 사용자 무급 ○ 백신휴가 3차부터 미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임금으로 임금책정 방법을 알 수 없음 ○ 식권 미사용시 처리 곤란 ○ 대기, 휴게공간 부족, 비위생적 화장실 ○ 체력단련시설, 샤워실 등 복지 부족 ○ 자녀장학금 노조별 차별 지급 ○ 코로나로 인해 승객 감소 ○ 방역물품 지급부족 ○ 자가격리, 확진시 자체해결 (주52시간위반) ○ 코로나로 인해 승객 마스크 단속 불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재해, 방역대응매뉴얼 필요 ○ 통합임금체계 해체, 임금책정 투명화, 주말, 공휴일, 야간수당 등 신설 ○ 식비지급, 자녀장학금 등 비차별 지급 ○ 대기, 휴게공간 확충, 화장실 정비 ○ 체력단련시설, 샤워실 확충 ○ 승객감소로 인한 업무시간 단축 등 ○ 버스방역, 청소 ○ 방역물품 충분한 지급 ○ 지자체관리감독 강화(퇴직금등)
김00	식품 가공 판매 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년수 4~5년 ○ 근무시간 오전 5시~오후8시 (시장 가는 날만), 보통 반나절 ○ 자영업자 ○ 4대보험 중 의료보험만 가입 ○ 병가, 연차 등 개념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로 인해 손님 급감 ○ 배달서비스 생각 중이나 수수료 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 손실보상금지원



제 5 장

전라북도 필수노동자 지원방안

1. 필수노동자 지원 정책 기본방향
2. 필수노동자 지원 과제



제 5 장 전라북도 필수노동자 지원방안

1. 필수노동자 지원 정책 기본방향

1) 필수노동자의 노동 가치에 대한 상시적 인정

- 필수업무 및 필수노동자는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분야가 아니라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노동자 본인이 위험한 환경에 놓여있지만 이를 감수하고 국가와 사회의 유지를 위해 노동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정책적 이슈가 됨
- 다시 말해 필수노동자는 재난상황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동일하게 국가와 사회의 유지 및 국민의 생활 지원을 위해 노동을 제공해왔으며, 그동안 노동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부불위험수당을 감내해왔으나 이에 비해 이들의 노동가치는 상대적으로 저평가 되어 왔음
- 그런 의미에서 필수업무 및 필수노동자들이 실제로는 사회적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노동을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는 인식이 사회전반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에 대한 한시적 보상 또는 지원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정당한 평가와 보호가 필요함

2) 필수노동자 노동기본권 보호 및 확대

- 국민의 생명과 건강, 사회기능의 유지를 위해 노동을 제공하고 있는 필수노동자들은 정작 자신들의 건강, 안전 등을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에 처해 있음
- 필수노동을 제공하는 공간의 작업시설 노후화로 안전과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으며, 대면접촉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감염병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경우도 허다함

-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의 필수노동자 보호·지원대책은 필수노동과 필수노동자에 대한 관심에 비해 필수노동자들이 체감할 만한 정책이나 사업은 부족한 상황
 - 다만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필수노동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정책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 필수노동자들의 권리와 이익, 건강과 안전이 보호됨으로써 필수노동의 질이 향상된다면 이는 국가와 사회, 국민들에게 이익임
 - 따라서 필수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

3) 필수노동자 정책 기반 마련

- 재난상황은 감염병 뿐만 아니라 자연재해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음
- 뿐만 아니라 감염병의 유행은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후 또 다른 형태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가와 지자체에서 필수노동자에 대한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필수노동자들이 사회에 필요한 서비스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정교하고 세심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2. 필수노동자 지원 과제

- 필수노동자 지원정책의 기본방향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6개의 필수노동자 지원과제를 제안하고자 함

[표 5-1] 전라북도 필수노동자 지원과제 요약

기본방향	지원과제	주요 내용
필수노동자의 노동 가치에 대한 상시적 인정	필수노동자 중요성 공감대 형성	필수노동자 캠페인 확대
	추가 방역업무에 대한 보상	인력확충, 방역물품 지원, 방역수당 지급 등
필수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호 및 지원확대	필수노동자 작업환경 개선	작업시설 및 휴게공간 리모델링
	필수노동자 상병수당 및 유급휴가 지원	유급 백신휴가 정착
필수노동자에 대한 정책 기반 마련	직종별 필수노동실태조사 및 보호·지원계획 수립	직종별로 순차적 조사 및 계획 수립
	필수노동자 권익보호 지원센터 설치·운영	전라북도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기능 확대

가. 필수노동 가치 인정 및 인식 제고

1) 필수노동자 중요성 공감대 형성

- 앞장의 필수노동자에 대한 면접결과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국가와 사회 기능 유지, 국민의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필수노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필수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평판은 낮은 상황
- 코로나19 초기 정치권, 유명인을 중심으로 진행해 왔던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캠페인과 같이 필수노동 가치를 인정하고 필수노동자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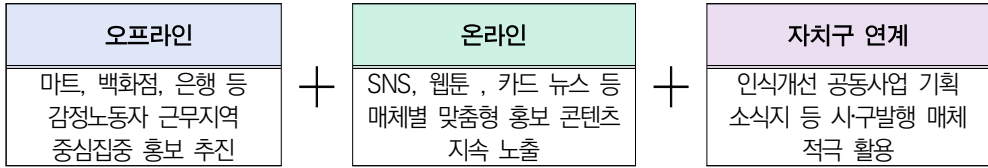


자료 : 성동구(2022)

[그림 5-1]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릴레이 캠페인 사진

- 또한 현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지자체 관련 조례 등에서의 필수노동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을 ‘재난 발생 시’라는 특정 시점으로 명시하고 있음
- 위기 상황에서도 필수노동자들이 국가와 국민의 삶 속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지, 특정 상황에서만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님
- 따라서 필수노동에 대한 정당한 가치를 알리고 필수노동자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정 시점이 아니더라도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하여 노동조건에 대한 근본적 개선 방안 마련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표 5-2] 서울의 필수노동자 정의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시민관심 유도 사례



2) 방역업무 추가로 인한 보상(인력확충, 방역 물품 지원 등)

- 필수노동자들은 자신과 사회 구성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현장에서 본인의 고유 업무 외에 추가적으로 방역업무를 담당함으로써 업무과부하 상황에 놓여있음
- 또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 방역을 위해 소요되는 방역물품을 노동자가 사비로 충당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 노동자의 사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닌 노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경우 이에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 일부 영역에서는 방역업무를 담당할 인력지원 사업이 지원되고 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지기 힘든 구조이므로 방역인력 확충 지원 사업의 경우 개선이 필요함
 - 보건복지부는 전액 국비로 코로나19 대응 방역인력을 지원(196억 원, 2,064명 규모)
 - 의료 관련 종사자(간호사, 임상병리사 등) 혹은 행정지원 인력 등 각 보건소 업무 수요에 맞게 자체적으로 채용 절차를 진행하게 함
 - 그러나 지리적으로 시내권과 멀리 위치한 요양원의 경우 방역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음
- 기존 노동자가 방역을 위해 고유업무 외의 추가업무에 투입되는 경우 방역수당을 신설할 필요가 있으며, 방역물품 구입비용에 대한 정산이 필요함
- 특히 고가의 방역 물품의 경우 정부·지자체·회사 차원에서 구비할 수 있도록 하고 방역물품을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함

나. 필수노동자 건강, 안전 보호 및 지원 확대

1) 필수노동자 작업환경 개선

- 필수노동자들은 작업공간이 열악하거나 안전시설 및 장비의 노후화로 인해 작업에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건강 또한 위협받는 상황에 놓여있음
- 필수노동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노동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편안하고 안전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작업장 시설 개선, 편의시설 및 휴게공간 개선, 휴식시간 등이 보장되어야 함



[그림 5-2] 한국형 청소차 사진



[그림 5-3] 000 휴게공간/사위실 사진

2) 필수노동자 상병수당 및 유급휴가 지원

- 코로나19 상황에서 생활방역의 일환인 자가격리와 백신접종으로 필수노동자들은 소득의 감소와 부작용을 경험했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음
- 최근 노동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치료를 받거나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상실되는 소득이나 임금의 일정부분을 보장해 주는 상병수당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⁹⁾
- 상병수당제도가 없는 나라는 OECD 36개국 중 미국과 한국 2개 국가 뿐이나, 미국의 경우 주정부 법에 근거하여 유급병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안수영, 2021)

9) 보건복지부 「상병수당제도 기획자문위원회」(2021.4.15.)

- 뿐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근로자에게 유급휴가 및 병가를 제공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이상 반응 시 접종 다음날까지 백신휴가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이상 반응이 지속될 경우 최대 2일까지 가능함
- 정부차원에서는 ‘유급 휴가’ 권고사항이나 회사차원에서는 유급 휴가 지급여부에 대해서는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회사는 유급 휴가를 지급할 수도 있고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임(개인연차 사용, 무급 휴가 사용)
- 정부 차원의 상병수당 또는 유급병가 제도 법제화가 필요하나, 이에 앞서 ‘전북형 상병수당 및 유급휴가 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 현재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유급 백신휴가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 협약이나 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표 5-3]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p>라. 백신 접종자에 대한 휴가 부여 및 접종 완료자 관리</p> <p>○ 사업주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u>접종 당일에는 접종에 필요한 시간, 접종 후 이상 증상이 나타나 신청하는 경우에는 접종 다음날*</u>에 최대한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p> <p>* 근로자가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의사소견서 등 별도 서류를 요구하지 않고 유급휴가 부여 권장(다음날 1일, 이상 반응 지속 시 2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 내 병가 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병가를 적극 활용한다. - 근로자가 백신 접종 후 휴식을 취하기 위해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최대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시기변경 자제) - 그 외에도 <u>사업장 여건에 따라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별도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u>
--

자료: 고용노동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2021.12.10.)

다. 필수노동자에 대한 중장기 정책지원 토대 마련

1) 직종별 필수노동 실태조사 및 보호·지원계획 수립

- 필수노동은 분야별·직종별로 고용노동여건 및 정책수요가 다양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해당 분야별 실효성 있고 체감도 높은 정책을 발굴·추진하기 위해서는 직종별 필수노동 실태조사와 그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이 필요함

[표 5-4] 전라북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조례(2021. 8. 13. 제정)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라북도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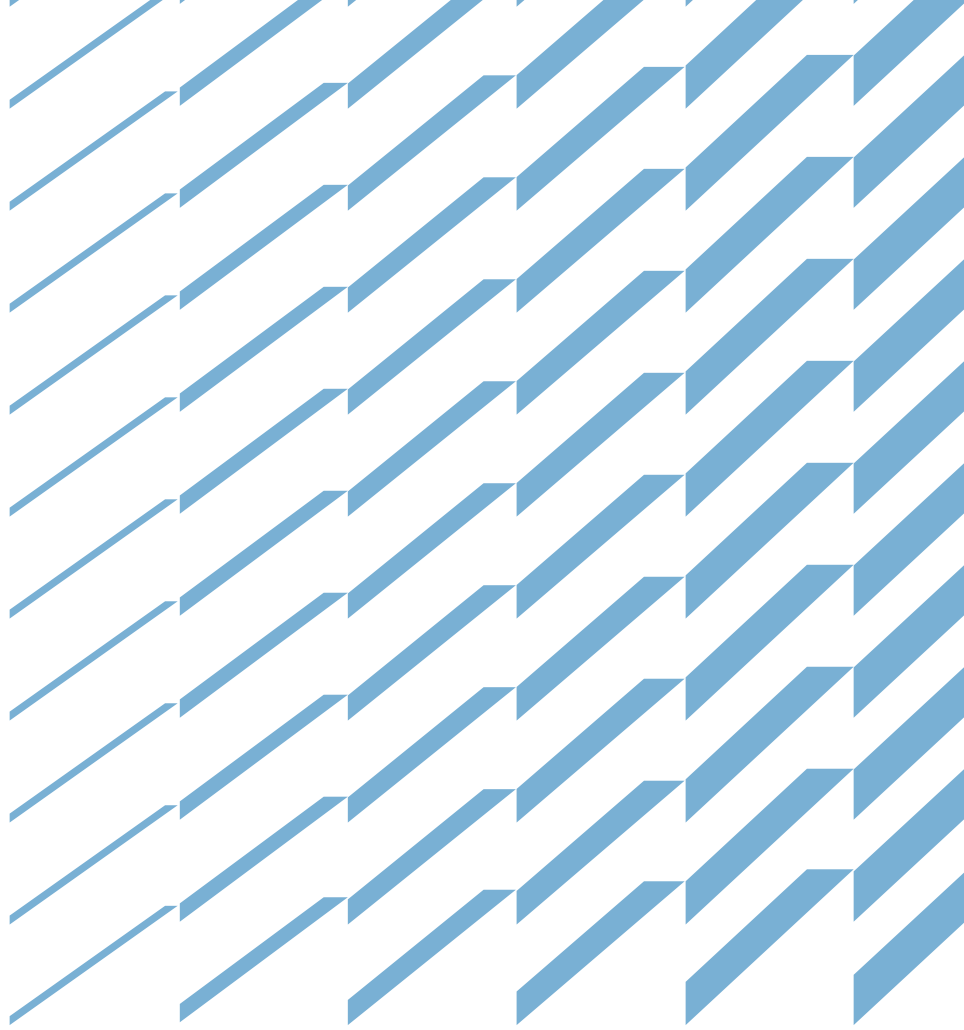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책, 제도 개선
4. 재원조달 방안
5. 노동환경 개선
6. 인권 존중 노동문화 조성 및 확산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재난상황에 따른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전라북도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필수노동자 권익 보호 지원센터 운영

- 필수노동자들은 코로나19 상황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고용의 불안정성, 고용여건 및 작업환경 열악성, 사회적 안전망 취약성 등 고충을 경험하고 있음
- 노동과 노동자가 존중받고 보호받는 일터, 노동문화 개선, 취약 근로자의 권리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최근 많은 지자체에서 노동권익센터를 설치하여 운영 중임
 - (광역) 서울, 부산, 대전, 경기, 충남, 전남 등
 - (기초) 성동구, 성북구, 마포구, 강동구, 성남시, 고양시, 김포시 등
- 전라북도의 경우 「전라북도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20. 제정)», 「전라북도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2021. 제정)», 「전라북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조례(2021. 제정)」 등 취약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상황
- 또한 취약 노동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전문 기관인 ‘전라북도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해당 기관은 전북지역의 비정규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향후 ‘전라북도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가 전라북도 전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 존중, 평등한 일터 조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역할과 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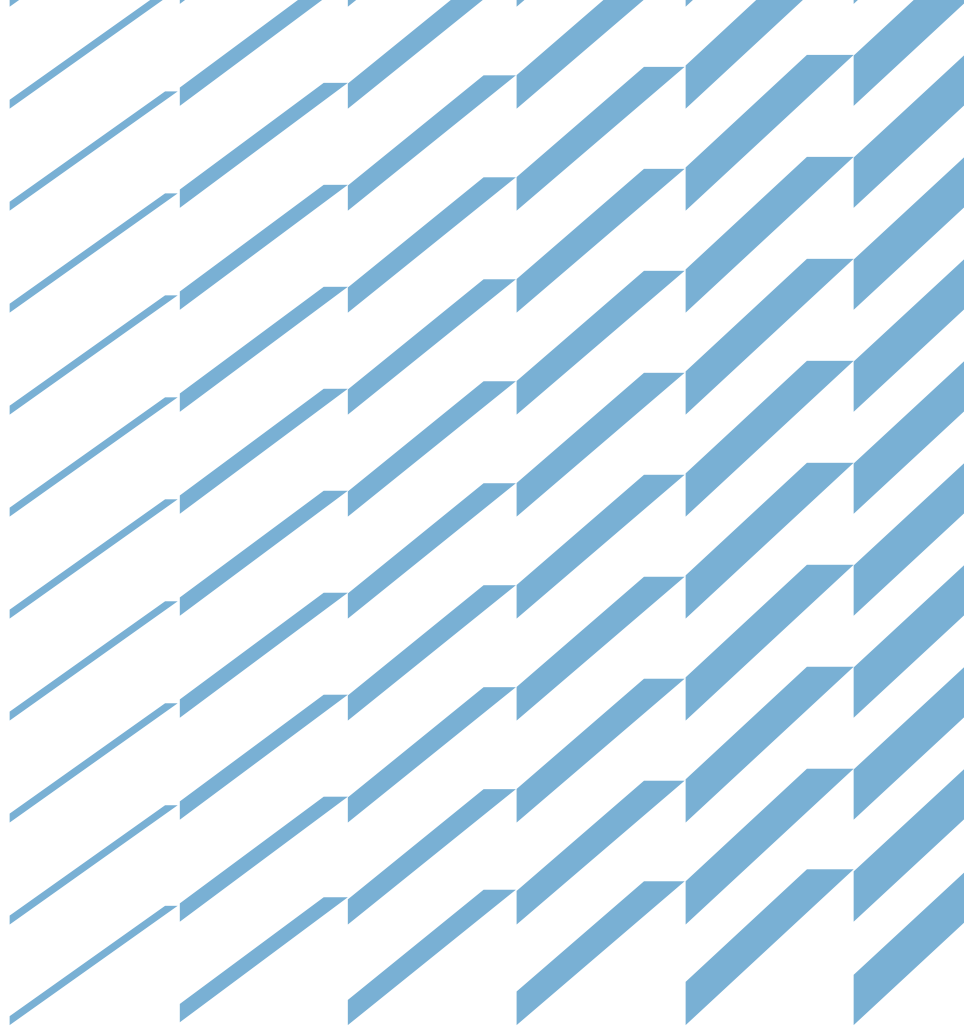
참 고 문 헌

REFER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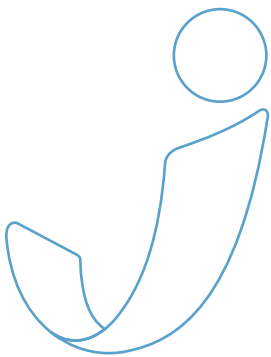
- 관계부처 합동. (2020. 12. 14.).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 [보도자료] 광주시노동센터. (2022. 04. 21.). 이동노동자 “달빛쉼터” 이용안내.
http://www.nodongcenter.org/bbs/board.php?bo_table=a01&wr_id=139&sca=&sf=wr_subject&stx=%EC%89%BC%ED%84%B0&sop=and&page=2
- 권오성. (2021. 05. 25.). 지방정부의 필수노동자 지원 정책과제. 필수노동자 지원에서 중앙·지방 정부·노동센터의 역할에 대한 토론편 [온라인 포럼]. 제20회 서울노동권익포럼, 서울, 대한민국.
- 경기도노동권익센터. (2022. 04. 21.). 연혁 및 주요활동. https://labor.gg.go.kr/info/labor_act/
- 김소연. (2021). 논산시 필수노동자 실태조사 연구. 논산시청.
- 김준현. (2020.05.20.). 미국의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한 「CARES Act」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159&brdSeq=29021>
- 백승호. (2021. 05. 25.). 지방정부의 필수노동자 지원 정책과제. 지방정부의 필수노동자 지원 정책과제 [온라인 포럼]. 제20회 서울노동권익포럼, 서울, 대한민국.
- 박고은 & 김규혜. (2021). 필수노동자의 일터 위험은 재난 시기에 어떻게 확대 (재) 생산되는가: 코로나19 와 성동구 돌봄노동자 사례를 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 71, 83-124.
- 석재은. (2020). 코로나19 국면에서 재조명된 장기요양 돌봄노동자의 취약성과 사회적 과제. 한국사회복지학, 72(4), 125-149.
- 신수정. (2021). 필수노동자에 대한 법적 보호 방안. 사회법연구, 44, 26-52.
- 이승윤, 백승호, 박고은, 김규혜 & 박성준. (2021). 성동구 필수노동자 실태조사 및 지원 정책 수립에 관한 연구. 성동구청.
- 장연주, 김유현, 이관후, 이연상, 이혜진, 하경준, 여양모 & 최진화. (2021). 경상남도 필수노동자 범위 설정 및 업종별 노동실태 현장조사 용역. 경상남도.
- 제주이동노동자 혼디쉼팡. (2022. 04. 21.). 혼디쉼팡 내부 모습.
http://edongjeju.com/bbs/board.php?bo_table=2_4_1_1&wr_id=9
- 채민석. (2020). 코로나19 확산과 영국의 필수노동자. 한국노동연구원.

<https://www.kli.re.kr/kli/downloadPodFile.do?pdicalOriginDwldNo=4771>

홍성훈. (2020). 코로나19의 영향과 미국 노동조합의 대응. 국제노동브리프 18(5). 47-56. 한국
노동연구원.



부록



부 록

APPENDIX

1. 도내 필수노동자 정책 관련 전문가 설문지

통계법 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 본 조사에서
개인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엄격히 보호됩니다.

ID			
----	--	--	--

전라북도 필수업무 우선지원분야 선정을 위한 전문가 조사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안녕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재)전북연구원은 전라북도 중장기 발전 정책연구 및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정책개발을 목적으로 전라북도에서 출연하여 설립한 정책연구기관입니다. 본 설문은 전라북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정책 마련을 위한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전문가 의견을 조사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설문조사의 결과는 전라북도가 우선 지원해야할 필수업무를 도출하고, 필수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해주신 내용은 통계 목적으로만 이용되며 개인적 비밀은 일체 보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성심껏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 2월

- ▶ 조사 기관 : (재)전북연구원
- ▶ 연구책임자 : 김수은 연구위원 ☎ 063-280-7133
E-mail)sookim@jthink.kr fax) 063-286-9206

조사 대상	응답자명:	소속기관:
	전화번호(HP):	이메일 주소:

A. 계층적 분석기법(AHP)을 통한 평가기준의 중요도 평가

※ 본 설문지의 1~3쪽은 설문응답을 위한 참고자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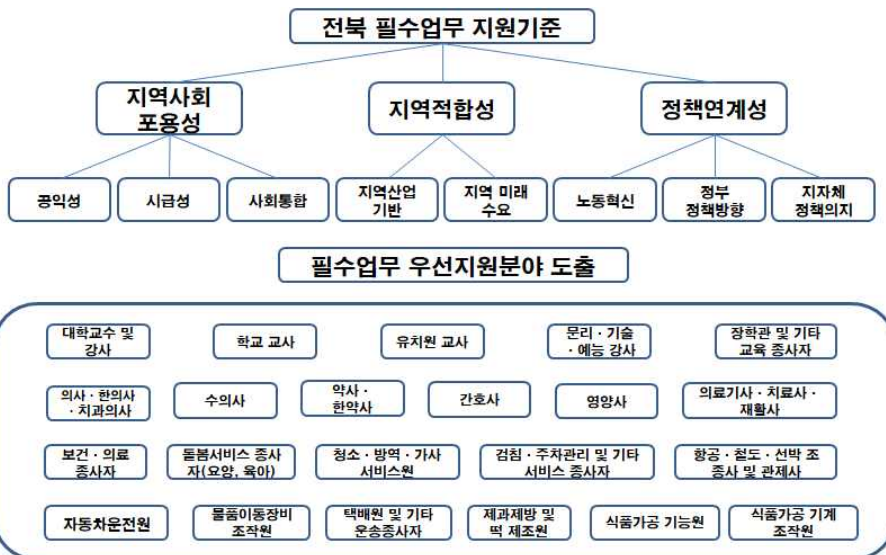
※ 계층적 분석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은 평가에서 고려되는 평가항목들을 계층화한 다음, 평가항목 간 상대적 중요도를 측정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의 우선순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의사결정 기법 중 하나임

■ 평가기준

〈전라북도 필수업무 우선지원 분야 평가기준〉

1단계	2단계	내용
지역사회 포용성	공공성	국민의 생명, 사회기능 유지를 위한 업무인가?
	시급성	대면성이 높은 업무로 감염병에 취약성을 가지고 있어 보호와 자원이 시급한 분야인가?
	통합성	고용 및 사회안전망이 취약하여 지자체 차원에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한 업무인가?
지역적합성	지역기반	타분야에 비해 현재 도내 종사자 비중이 높은 업무인가?
	미래수요	향후 도내 수요가 확대될 업무인가?
정책연계성	노동혁신 기여	지원정책에 따라 지역노동에서의 혁신이 유도되는 분야인가?
	정부정책 연계	정부 필수노동자 지원대책과 연계하여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업무인가?
	지자체 정책의지	지자체차원에서 정부정책을 보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는 업무인가?

■ 평가항목의 계층구조



■ 전라북도 필수업무 중점 지원을 위한 직업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세분류
교육직	대학 교수 및 강사	대학 교수, 대학 시간강사
	학교 교사	중·고등학교 교사, 초등학교 교사 특수교육 교사, 기타 교사
	유치원 교사	유치원 교사
	문리기술예능 강사	문리·이학 강사, 컴퓨터 강사, 기술기능계 강사, 예능 강사 학습자교육교구 방문강사 기타 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
	장학관 및 기타 교육 종사자	장학관·연구관 및 교육 전문가 대학 교육 조교(연구 조교 포함) 교사보조 및 보육보조 서비스 종사원
보건·의료직	의사, 한의사 및 치과의사	전문 의사, 일반 의사 한의사, 치과 의사
	수의사	수의사
	약사 및 한약사	약사 및 한약사
	간호사	간호사
	영양사	영양사
	의료기사·치료사·재활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물리 및 작업 치료사, 임상심리사, 재활공학 기사 기타 치료재활사 및 의료기사
돌봄·의료 종사자	응급구조사, 위생사 안경사, 의무기록사 간호조무사, 안마사 기타 보건·의료 종사원	
	요양 보호사 및 간병인 육아 도우미	
돌봄 서비스직 (간병·육아)	돌봄서비스 종사자 (요양보호사 및 간병인)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청소·방역 및 가사 서비스원	청소원,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 배관 세정원 및 방역원 구두 미화원, 세탁원(다림질원) 가사도우미
	검침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단순 종사자	계기 검침원 및 가스 점검원 자동판매기 관리원 주차관리·안내원, 검표원 기타서비스 단순 종사원
운전·운송직	항공기·선박·철도 조종사 및 관제사	항공기 조종사, 선장, 항해사 및 도선사, 철도·전동차 기관사 관제사, 기타 철도운송 종사원
	자동차 운전원	택시 운전원, 버스 운전원 화물차·특수차 운전원 기타 자동차 운전원(대리기사 등)
	물품이동장비 조작원 (크레인·호이스트·지게차)	물품이동장비 조작원 (크레인·호이스트·지게차)
	택배원 및 기타 운송 종사자	택배원, 우편물 집배원 선박승무원 및 관련 종사원(선박객실 승무원 제외) 하역·적재 종사원, 기타 배달원
식품 가공·생산직	제과·제빵원 및 떡 제조원	제과·제빵원, 떡 제조원
	식품가공 기능원	정육원 및 도축원, 김치·밀박찬 제조 종사원 식품담배 공급원, 기타 식품가공 종사원
	식품가공 기계 조작원	육류·어패류·낙농품 가공기계 조작원 재분도정 기계 조작원, 곡물 가공제품 기계 조작원 과실채소기계 조작원, 음료 제조기계 조작원 기타 식품 가공 기계 조작원

■AHP 설문문항에 대한 평가

※ (예시) '지역사회 포용성'이라는 평가기준에 따라 '공익성'이 '시급성'보다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왼쪽 '매우 중요'에 "✓"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평가 기준	절대 중요	매우 중요	중요	약간 중요	동일	약간 중요	중요	매우 중요	절대 중요	평가 기준								
공익성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시급성

A1. [1단계] 전라북도 필수업무 종사자 우선 지원분야 도출을 위한 평가기준의 상대적 중요도에 "✓"표 해주십시오.

※ 전라북도 필수업무 종사자 우선 지원분야 도출을 위한 평가기준은 지역사회 포용성, 지역적합성, 정책연계성입니다. 이러한 기준에 대한 가중치를 측정하기 위해 상대적인 중요도를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지역사회 포용성	지역 적합성	정책 연계성
순위	()	()	()

평가 기준	절대 중요	매우 중요	중요	약간 중요	동일	약간 중요	중요	매우 중요	절대 중요	평가 기준								
지역사회 포용성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지역 적합성
지역사회 포용성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정책 연계성
지역 적합성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정책 연계성

A2.1. [2단계] 지역사회 포용성 측면에서 각 항목의 상대적 중요도에 "✓"표 해주십시오.

※ 전라북도 필수업무 종사자 우선 지원분야 도출을 위한 평가기준인 지역사회 포용성 평가를 위한 세부지표는 공익성, 시급성, 통합성 등 3가지입니다. 이러한 기준에 대한 가중치를 측정하기 위해 상대적인 중요도를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공익성	시급성	사회통합
순위	()	()	()

평가 기준	절대 중요	매우 중요	중요	약간 중요	동일	약간 중요	중요	매우 중요	절대 중요	평가 기준								
공익성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시급성
공익성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사회 통합
시급성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사회 통합

A2_2. [2단계] 지역 적합성 측면에서 각 항목의 상대적 중요도에 “√”표 해주십시오.

※ 전라북도 필수업무 종사자 우선 지원분야 도출을 위한 평가기준인 지역적합성 평가를 위한 세부지표는 지역기반, 지역 미래수요 등 2가지입니다. 이러한 기준에 대한 가중치를 측정하기 위해 상대적인 중요도를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지역산업 기반										지역 미래수요				
순위	()										()				

평가 기준	절대 중요		매우 중요		중요		약간 중요		동일		약간 중요		중요		매우 중요		절대 중요	평가 기준
지역산업 기반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지역 미래수요

A2_3. [2단계] 정책연계성 측면에서 각 항목의 상대적 중요도에 “√”표 해주십시오.

※ 전라북도 필수업무 종사자 우선 지원분야 도출을 위한 평가기준인 정책연계성 평가를 위한 세부지표는 혁신성, 정부정책방향, 지자체정책의지 등 3가지입니다. 이러한 기준에 대한 가중치를 측정하기 위해 상대적인 중요도를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노동혁신									정부정책 방향					지자체 정책의지				
순위	()									()					()				

평가 기준	절대 중요		매우 중요		중요		약간 중요		동일		약간 중요		중요		매우 중요		절대 중요	평가 기준
노동혁신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정부정책방향
노동혁신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지자체 정책의지
정부정책방향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지자체 정책의지

B. 22개 서비스산업의 평가기준별 중요도 평가

B1. **공익성 측면**에서 다음 산업을 평가하기 위한 **상대적 중요도를 10점 만점 기준**으로 “✓”표 해주십시오. (***22개 분야별로 중요한 순서의 서열이 나올 수 있도록 상대평가**)

공익성 측면	상대적 중요도 평가점수									
	1	2	3	4	5	6	7	8	9	10
① 대학교수 및 강사										
② 학교 교사										
③ 유치원 교사										
④ 문리·기술·예능 강사										
⑤ 장학관 및 기타 교육 종사자										
⑥ 의사·한의사·치과의사										
⑦ 수의사										
⑧ 약사·한약사										
⑨ 간호사										
⑩ 영양사										
⑪ 의료기사·치료사·재활사										
⑫ 보건·의료종사자										
⑬ 돌봄서비스 종사자										
⑭ 청소·방역·가사서비스원										
⑮ 검침주재원 및 기타종사자										
⑯ 항공·철도·선박·조선사 및 관제사										
⑰ 자동차운전원										
⑱ 물품이동장비 조작원										
⑲ 택배원 및 기타 운송종사자										
⑳ 제과제빵 및 떡 제조원										
㉑ 식품가공 기능원										
㉒ 식품가공 기계조작원										

B2. **시급성 측면**에서 다음 산업을 평가하기 위한 **상대적 중요도를 10점 만점 기준**으로 “✓”표 해주십시오.

시급성 측면	상대적 중요도 평가점수									
	1	2	3	4	5	6	7	8	9	10
① 대학교수 및 강사										
② 학교 교사										
③ 유치원 교사										
④ 문리·기술·예능 강사										
⑤ 장학관 및 기타 교육 종사자										
⑥ 의사·한의사·치과의사										
⑦ 수의사										
⑧ 약사·한약사										
⑨ 간호사										
⑩ 영양사										
⑪ 의료기사·치료사·재활사										
⑫ 보건·의료종사자										
⑬ 돌봄서비스 종사자										
⑭ 청소·방역·가사서비스원										
⑮ 검침주재원 및 기타종사자										
⑯ 항공·철도·선박·조선사 및 관제사										
⑰ 자동차운전원										
⑱ 물품이동장비 조작원										
⑲ 택배원 및 기타 운송종사자										
⑳ 제과제빵 및 떡 제조원										
㉑ 식품가공 기능원										
㉒ 식품가공 기계조작원										

B3. 사회통합 측면에서 다음 산업을 평가하기 위한 상대적 중요도를 10점 만점 기준으로 “√”표 해주십시오.

사회통합 측면	상대적 중요도 평가점수									
	1	2	3	4	5	6	7	8	9	10
① 대학교수 및 강사										
② 학교 교사										
③ 유치원 교사										
④ 문리·기술·예능 강사										
⑤ 정학관 및 기타 교육 종사자										
⑥ 의사·한의사·치과의사										
⑦ 수의사										
⑧ 약사·한약사										
⑨ 간호사										
⑩ 영양사										
⑪ 의료기사·치료사·재활사										
⑫ 보건·의료종사자										
⑬ 돌봄서비스 종사자										
⑭ 청소·방역·가사서비스원										
⑮ 검침주재원 및 기타종사자										
⑯ 항공·철도·선박·조선사 및 관제사										
⑰ 자동차운전원										
⑱ 물품이동장비 조작원										
⑲ 택배원 및 기타 운송종사자										
⑳ 계과제빵 및 떡 제조원										
㉑ 식품가공 기능원										
㉒ 식품가공 기계조작원										

B4. 지역산업 기반 측면에서 다음 산업을 평가하기 위한 상대적 중요도를 10점 만점 기준으로 “√”표 해주십시오.

지역산업 기반 측면	상대적 중요도 평가점수									
	1	2	3	4	5	6	7	8	9	10
① 대학교수 및 강사										
② 학교 교사										
③ 유치원 교사										
④ 문리·기술·예능 강사										
⑤ 정학관 및 기타 교육 종사자										
⑥ 의사·한의사·치과의사										
⑦ 수의사										
⑧ 약사·한약사										
⑨ 간호사										
⑩ 영양사										
⑪ 의료기사·치료사·재활사										
⑫ 보건·의료종사자										
⑬ 돌봄서비스 종사자										
⑭ 청소·방역·가사서비스원										
⑮ 검침주재원 및 기타종사자										
⑯ 항공·철도·선박·조선사 및 관제사										
⑰ 자동차운전원										
⑱ 물품이동장비 조작원										
⑲ 택배원 및 기타 운송종사자										
⑳ 계과제빵 및 떡 제조원										
㉑ 식품가공 기능원										
㉒ 식품가공 기계조작원										

B5. 지역 미래수요 측면에서 다음 산업을 평가하기 위한 상대적 중요도를 10점 만점 기준으로 “√”표 해주십시오.

미래수요 측면	상대적 중요도 평가점수									
	1	2	3	4	5	6	7	8	9	10
① 대학교수 및 강사										
② 학교 교사										
③ 유치원 교사										
④ 문리·기술·예능 강사										
⑤ 장학관 및 기타 교육 종사자										
⑥ 의사·한의사·치과의사										
⑦ 수의사										
⑧ 약사·한약사										
⑨ 간호사										
⑩ 영양사										
⑪ 의료기사·치료사·재활사										
⑫ 보건·의료종사자										
⑬ 돌봄서비스 종사자										
⑭ 청소·방역·가사서비스원										
⑮ 겸직 주재원 및 기타종사자										
⑯ 항공·철도·선박·조선사 및 관제사										
⑰ 자동차운전원										
⑱ 물품이동장비 조작원										
⑲ 택배원 및 기타 운송종사자										
⑳ 제과제빵 및 떡 제조원										
㉑ 식품가공 기능원										
㉒ 식품가공 기계조작원										

B6. 노동혁신 측면에서 다음 산업을 평가하기 위한 상대적 중요도를 10점 만점 기준으로 “√”표 해주십시오.

노동혁신 측면	상대적 중요도 평가점수									
	1	2	3	4	5	6	7	8	9	10
① 대학교수 및 강사										
② 학교 교사										
③ 유치원 교사										
④ 문리·기술·예능 강사										
⑤ 장학관 및 기타 교육 종사자										
⑥ 의사·한의사·치과의사										
⑦ 수의사										
⑧ 약사·한약사										
⑨ 간호사										
⑩ 영양사										
⑪ 의료기사·치료사·재활사										
⑫ 보건·의료종사자										
⑬ 돌봄서비스 종사자										
⑭ 청소·방역·가사서비스원										
⑮ 겸직 주재원 및 기타종사자										
⑯ 항공·철도·선박·조선사 및 관제사										
⑰ 자동차운전원										
⑱ 물품이동장비 조작원										
⑲ 택배원 및 기타 운송종사자										
⑳ 제과제빵 및 떡 제조원										
㉑ 식품가공 기능원										
㉒ 식품가공 기계조작원										

B7. 정부 정책방향 측면에서 다음 산업을 평가하기 위한 상대적 중요도를 10점 만점 기준으로 “√”표 해주십시오.

정부 정책방향 측면	상대적 중요도 평가점수									
	1	2	3	4	5	6	7	8	9	10
① 대학교수 및 강사										
② 학교 교사										
③ 유치원 교사										
④ 문리·기술·예능 강사										
⑤ 정학관 및 기타 교육 종사자										
⑥ 의사·한의사·치과의사										
⑦ 수의사										
⑧ 약사·한약사										
⑨ 간호사										
⑩ 영양사										
⑪ 의료기사·치료사·재활사										
⑫ 보건·의료종사자										
⑬ 돌봄서비스 종사자										
⑭ 청소·방역·가사서비스원										
⑮ 검침주재원 및 기타종사자										
⑯ 항공·철도·선박·조선사 및 관제사										
⑰ 자동차운전원										
⑱ 물품이동장비 조작원										
⑲ 택배원 및 기타 운송종사자										
⑳ 제과제빵 및 떡 제조원										
㉑ 식품가공 기능원										
㉒ 식품가공 기계조작원										

B8. 지자체 정책의지 측면에서 다음 산업을 평가하기 위한 상대적 중요도를 10점 만점 기준으로 “√”표 해주십시오.

지자체 정책의지 측면	상대적 중요도 평가점수									
	1	2	3	4	5	6	7	8	9	10
① 대학교수 및 강사										
② 학교 교사										
③ 유치원 교사										
④ 문리·기술·예능 강사										
⑤ 정학관 및 기타 교육 종사자										
⑥ 의사·한의사·치과의사										
⑦ 수의사										
⑧ 약사·한약사										
⑨ 간호사										
⑩ 영양사										
⑪ 의료기사·치료사·재활사										
⑫ 보건·의료종사자										
⑬ 돌봄서비스 종사자										
⑭ 청소·방역·가사서비스원										
⑮ 검침주재원 및 기타종사자										
⑯ 항공·철도·선박·조선사 및 관제사										
⑰ 자동차운전원										
⑱ 물품이동장비 조작원										
⑲ 택배원 및 기타 운송종사자										
⑳ 제과제빵 및 떡 제조원										
㉑ 식품가공 기능원										
㉒ 식품가공 기계조작원										

C. 중점 보호·지원 업종 추천 및 건의사항

○ 위에서 수행한 산업별 상대적 중요도 평가를 고려해서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중점지원 분야를 2개 정도 추천하고, 그 이유와 제안 사업을 적어주십시오.

C1. 추천 중점업종: _____

(1) 추천 이유와 향후 전망 등

(2) 세부 추진사업

① 사업명 :
- 사업내용 :

② 사업명 :
- 사업내용 :

C2. 추천 중점업종: _____

(1) 추천 이유와 향후 전망 등

(2) 세부 추진사업

① 사업명 :
- 사업내용 :

② 사업명 :
- 사업내용 :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정책연구 2022-12

전라북도 필수노동자 현황과 지원방안

발행인 | 권혁남

발행일 | 2022년 3월 31일

발행처 | 전북연구원

55068 전북 전주시 완산구 콩쥐팍쥐로 1696

전화: (063)280-7100 팩스: (063)286-9206

ISBN 978-89-6612-385-8 93330

본 출판물의 판권은 전북연구원에 속합니다.

 **전북연구원**

550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콩쥐팍쥐로 1696

Tel 063. 280. 7100

Fax 063. 286. 9206

www.jthink.kr

